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2010. 12.

여 신 금 융 협 회

머 리 말

여신금융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비자금융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지불결제 수단으로 IT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그 기능이 발전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금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할부금융은 서민금융지원에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의 관리 부주의와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상품공시와 광고규제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과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판례, 분쟁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이 신용카드 및 할부사 직원 여러분의 업무현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여신금융협회 시장부

- 목 차 -

Ⅰ. 분쟁조정제도 개관

1. 법원 이외의 분쟁조정 제도

2. 소송의 유형

2-1. 소액사건심판절차

2-2. 지급명령

2-3. 통상의 소송절차

Ⅱ. 신용카드 관련 분쟁조정 사례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등의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속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도3126]

1-2. 형이 친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동생은 상환책임이 없다.(금융감독원)

1-3. 부정 재발급 사용된 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한국소비자원)

2.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2-1.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됐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도8767]

2-2.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규정한 부정사용대금의 보상 제외규정이 개인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자[대법원 2009다31970]

2-3.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도3977]

2-4.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넨 카드로 합의에 따라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도654]

2-5.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보상 판단 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금융감독원)

2-6. 신용카드 반납 이후 부정사용된 물품대금에 대한 보상 책임(금융감독원)

2-7. 결제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회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금융감독원)

2-8. 여행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행자의 가방에 잠시 신용카드를 보관한 경우 규약에서 정하는 '제3자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금융감독원)

2-9.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카드가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 사고보상(금융감독원)

2-10. 카드분실신고 후 ARS로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책임(금융감독원)

2-11. 잘못 인도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2-12.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 소홀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2-13. 해지 처리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책임(금융감독원)

2-14. CD기를 통하여 직접 인출된 카드론의 유효 여부(금융감독원)

2-15. 비밀번호 변경 이후 안심클릭서비스를 통한 부정사용 책임(금융감독원)

2-16. 임의 발급된 가족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금융감독원)

2-17. 배우자가 카드회원 본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의 책임여부(금융감독원)

2-18. 이미 결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 배상 요구(한국소비자원)

3. 신용카드 거래 관련

3-1.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1)[대법원 2004도6859]

3-2.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대법원 2006도282]

3-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3다60297]

3-4.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및 처분허락의 인정 범위[대법원 2005다71659]

3-5.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대법원 2007도1925]

3-6. 당초 설명과 달리 수수료 청구된 선포인트 결제서비스 취소 요구(한국소비자원)

4. 철회·항변관련

4-1. 신용카드 수기거래 관련 결제취소 가능여부(금융감독원)

4-2. 네비게이션 할부금 잔액 지급책임 유무(금융감독원)

4-3.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아파트 샤시공사대금의 항변권유무(금융감독원)

4-4.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 (한국소비자원)

5. 신용카드 관련 기타

5-1.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서울고법 2007나1748]

5-2. 신용카드 모집에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대법원 2004도1639]

5-3.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인지 여부[대법원 2008도2440]

5-4. 도난당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보상 범위(금융감독원)

5-5.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이의(금융감독원)

5-6.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인출한 현금의 적용환율에 대한 이의(금융감독원)

5-7.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금융감독원)

5-8. 카드사가 연대보증인이 퇴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퇴임 후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금융감독원)
5-9. 위조된 신용카드로 예금이 인출되었을 경우 회원의 과실이 없다면 은행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금융감독원)
5-10. 가맹점이 위조된 해외카드 번호로 수기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사고 보상(금융감독원)
5-11.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조정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책임(금융감독원)
5-12. 신용보장서비스 관련 설명시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경우 이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5-13. 체크카드에 의한 해외현금 인출 이의신청시 선보상 가능여부(금융감독원)
5-14. 도난당한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로 인출된 예금 보상 요구(한국소비자원)

Ⅲ.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

6. 할부금융 관련

6-1.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대신하여 리스물건의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범위(금융감독원)
6-2. 캐피탈사가 청구한 가압류비용의 정당성 여부(금융감독원)
6-3. 할부금융사의 근저당설정 착오로 인한 책임(금융감독원)
6-4. 할부금융사의 계약 중도해지 시 리스보증금 반환책임(금융감독원)
6-5. 할부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금융감독원)
6-6. 자동차 할부대출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금융감독원)

Ⅳ. 부록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3.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Ⅰ. 분쟁조정제도 개관

1. 법원 이외의 분쟁조정 제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근거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목적	• 소비자 피해는 소액·다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	• 전자거래의 비대면성·비서면성·내용수정의 용이성 및 소액 다수거래로 인한 다기간의 광범위한 피해발생과 국경을 넘는 피해의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 금융수요자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분쟁 해결
절차	• 분쟁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침	• 분쟁 이해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설치된 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 • 위원회에서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통지,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 • 조정신청 후 45일 이내에 1~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 양 당사자에게 권고	• 금융기관, 금융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는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 감독원은 신청받은 분쟁에 대하여 합의 권고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 후 수락 권고

특징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소송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	• 문서의 통지, 송달 및 조정의 신청 등을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 채택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소송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
조정의 성립	•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인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의 불성립	• 분쟁조정 내용의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불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분쟁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조정 불응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당해 조정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조정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된 경우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당해 조정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소송의 유형

2-1. 소액사건심판절차

□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

□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

□ 소액사건은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통상의 소송절차는 서면주의가 원칙)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며 증거조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등 심리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존재

□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을 선고(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2주일 내에 판결을 선고)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 상고가 제한

2-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소가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가능한 절차

□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인지액이 통상 절차의 1/10이므로 저렴한 절차로 집행권원(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 즉, 압류, 경매 등을 가능하게 하는 권원) 획득 가능

□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나, 이 신청서 부본은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만약 고객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해 주는 등의 절차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측에 지급명령을 송달

□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고객은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

2-3. 통상의 소송절차

□ 고객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 → 소장의 부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송달 → 신용카드가맹점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 답변서에는 원고인 고객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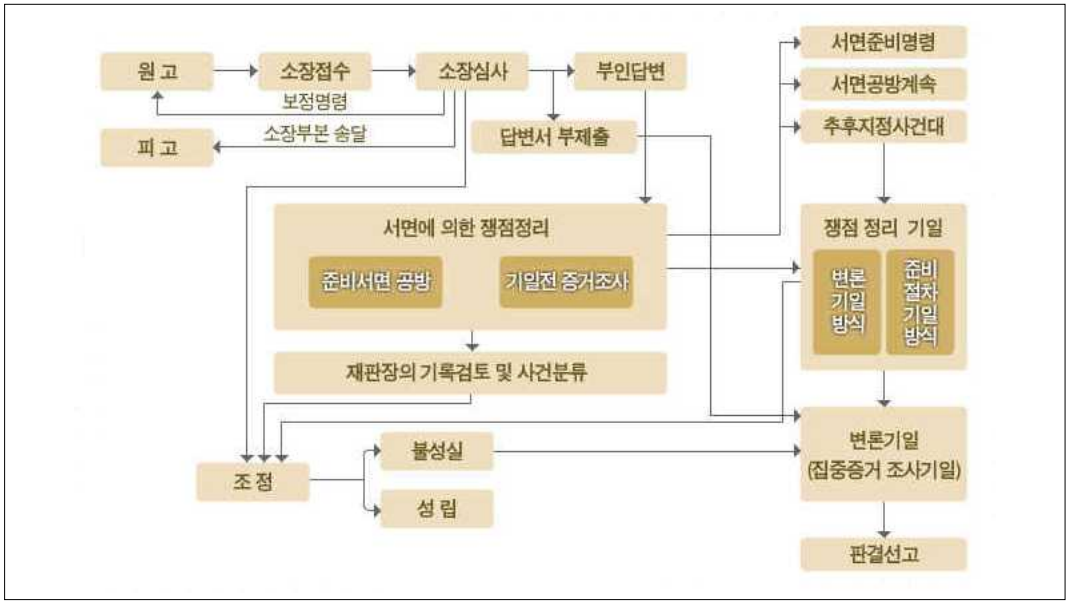
□ 만약 피고인 신용카드가맹점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양당사자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와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로 이루어져 있음)에 회부 → 변론기일*(증인 신문 등 집중적인 증거조사)

*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그 뒤 변론기일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을 도모

□ 변론기일(1회) → 변론 종결 → 2주 내에 법원의 판결 선고 →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급법원에 상소*

*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한 법원(항소의 경우 1심법원, 상고의 경우 2심법원)에 제출


원 고
소장접수
소장심사
부인답변
보정명령
피 고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부제출
서면준비명령
서면공방계속
추후지정사건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준비서면 공방
기일전 증거조사
쟁점 정리 기일
변론 기일 방식
준비 절차 기일 방식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조 정
불성실
성 립
변론기일 (집중증거 조사기일)
판결선고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Ⅱ. 신용카드 관련 분쟁조정 사례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등의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47조의2 / [3]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1-2. 형이 친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동생은 상환책임이 없다.(금융감독원)

【사건개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신청인은 형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어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발급·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함. 그런데 카드회사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형에게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발급해 준 후 형이 사용한 부정사용대금 350만원을 신청인에게 갚으라고 함. 이에 신청인은 대리권이 없는 형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잘못이 카드회사에 있음에도 카드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함은 부당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함. 한편, 신청인은 형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형을 수사기관에 고소함

【카드회사 주장】

카드회사는 2003. 3. 13.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신용카드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는바, 설령 신청인이 형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은 카드사용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 카드회사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3자와 본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무권대리가 되는데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된다.

□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된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형성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로서 ①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②권한을 넘는 표현대

리(제126조) ③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추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 본건 분쟁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에 의한 표현대리는 될 수 없고 대리권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만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카드회사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 달리 신청인이 형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위임장 등 외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결국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감독원에서는 본건의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카드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수령·사용하였거나 추인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건 카드계약은 무효이므로 카드회사는 신청인에게 부정사용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조정하였다.

1-3. 부정 재발급 사용된 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2002. 2. 19.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 850여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본인의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카드사용 정지를 요청한 후 2002. 2. 20.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2001. 12. 19. 청구인의 카드를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게 됨. 이에 카드사에 보상 신청 후 기다리던 중 2002. 2. 28. 또 다시 타인이 카드를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부정사용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신용카드가 타인에게 재발급되어 부정사용된 바, 카드사에 부정사용액에 대해 전액 보상 및 기인출금의 반환을 요구함

【판단근거】

□ 사건 진행경위(청구인 진술)

○ 2002. 2. 19.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카드사에 카드사용 정지를 요청함

○ 2002. 2. 20.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카드사를 방문, 카드사고 신고 및 보상을 요청함(카드사 담당자 : 정OO)

○ 2002. 3월 중순 카드사 담당자 정OO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 후 재발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전화를 받음

○ 카드사 담당자 정OO은 보상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현재는 비밀번호 누설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 카드 발급 내역

○ 최초 발급(1997. 9. 26.)

○ 1차 재발급(2001. 12. 19.) : 도난분실 재발급

○ 2차 재발급(2002. 2. 28.) : 도난분실 재발급

○ 1차 및 2차 카드 재발급 경위 : 청구인 아닌 제3자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유선으로 2001. 12. 19, 2002. 2. 28. 두번에 걸쳐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분실신고 당일 재발급이 이루어짐

□ 재발급 카드 우송지 및 수령자

○ 우송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로O가 (주)OO상가 O층 OO호

○ 1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수령자 : 김OO(직원)
배달년월일 : 2001. 12. 28.

○ 2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수령자 : 이OO(직원)
배달년월일 : 2002. 3. 8.

○ 카드사가 확인한 결과, 수령자 김OO, 이OO은 (주)OO상가 O층 OO호의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퇴사하였고 추가적인 사항은 조사 중이라고 하며, 청구인은 (주)OO상가 O층 OO호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

□ 부정사용 내역

○ 1차 재발급 카드 사용내역 (총 18,485천원)
사용기간 : 2001. 12. 28.~2002. 1. 26.
현금 서비스 : 24회, 16,000천원
물품 : 1회, 2,485천원

○ 2차 재발급 카드 사용내역 (총 8,005천원)
사용기간 : 2002. 3. 8.~2002. 3. 15.
현금 서비스 : 30회, 8,000천원
물품 : 1회, 5,000원

□ 카드대금 인출금액

○ 카드사는 청구인의 결제구좌에서 4회에 걸처 10,112,444원을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됨

□ 기타 사항

○ 청구인은 이건 카드 부정사고에 대해 청주 OO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임

□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신용카드 도난 분실 재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드 재발급에 의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청은 회원규약 제8조 5항 및 제16조 3항 3호에 의거하여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사용대금"에 해당되므로 보상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면,

(1)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재도 소지하고 있고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카드의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카드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인지한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는 부정발급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타인에게 부정발급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3) 분실도난 신고 후 재발급된 카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변경된 주소지의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 되었는 바,

(4)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전달된 후부터 그 책임은 카드회원에게 있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며, 대금변제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책임과 그 위험은 카드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사실을 카드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원규약 제8조 5항 및 제16조 3항 3호에 의거한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 불가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청구인이 경찰서에 이건 부정사용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카드 재발급 과정상의 과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먼저 청구인에게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을 보상처리

하고 부정사용자를 직접 찾아 부정사용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건 카드의 부정사용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카드사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카드사는 청구인에게 요구한 카드사용대금 납부요구를 취소하도록 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이미 인출해간 금 10,112,44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처리결과】

카드사는 2002. 7. 15.까지 청구인에게 요구한 카드사용대금의 납부요구를 취소하고 금 10,112,440원을 환급함

2.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2-1.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됐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767,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2]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2]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공1992, 217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공1994상, 224)

【이 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

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나아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법리 및 사실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2.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규정한 부정사용대금의 보상 제외규정이 개인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자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2]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3.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3977, 판결]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의미 및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직불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 제6호 , 제13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직불카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4.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넨 카드로 합의에 따라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7.6, 선고, 2006도654, 판결]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2]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편의점 업주가 인근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손님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대금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유흥주점 업주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가격이나 할인가격으로 처분한 사안에서, 편의점 업주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2]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편의점 업주가 인근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손님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대금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유흥주점 업주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가격이나 할인가격으로 처분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는 있었으나 자금융통에 대한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으며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이상 편의점 업주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3]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 [4]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 [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916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공2004상, 666)

2-5.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보상 판단 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A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어 현금서비스 99만원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은 2009년 5월 5일 새벽, 음주 후 경기도 OO시 소재'B 노래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일'B 노래주점'인근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민원신청인의 신용카드로 비밀번호 1회 오류 입력된 후 04:01:30에서 04:04:32 사이에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99만원이 인출되었으며,

□ 민원신청인은 2009년 5월 5일 01:27:01 인근의 다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10만원을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있음.

○ 민원신청인은 2009년 6월 16일 A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이용청구서를 받고, 즉시 A카드사에 현금서비스 미사용을 주장하며 도난•분실신고 접수 후, 2009년 6월 17일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접수함.

□ 2009년 9월 23일 A카드사는 경찰의 사고 조사결과 및 민원신청인과 피의자간의 형사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본건 부정사용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함.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2009년 5월 5일 주류대 등을 선불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 10만원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카드의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현금서비스 99만원을 이용한 적은 없으며'B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A카드사가 부당하게 민원신청인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A카드사는 경찰의 사고 조사결과'B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여성도우미를 통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이 민원신청인에게 있다며,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함.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는"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31970)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이 음주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성명불상의 제3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과실이 없음을 회원이 입증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누설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회원)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며, 본건 2심(서울북부지방법원2008나9073)에서는"피고는 만취상태였으므로 무의식중에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어,

○ 위 약관과 판례에 의하여 판단해본 결과, A카드사가 제출한'사실증명원(OO경찰서 담당형사 작성)'의 개요란에"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동 업소 마담인 피의자 김OO은 아가씨들로 하여금 피해자(민원신청인)에게 술 접대를 한다면서 모텔예약 관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민원신청인)로부터 카드비밀번호를 알아내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민원신청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바, 민원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시 사 점】

□ 신용카드는 현대사회에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부정사용문제가 발생하는바 회원은 신용카드를 현금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또한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정사용 거래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본건 현금서비스와 같이 심야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사용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과 가맹점주 또는 그 종업원이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 가맹점계약 등을 해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6. 신용카드 반납 이후 부정사용된 물품대금에 대한 보상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A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甲카드사의 신용카드를 2009. 6. 22. A은행에 반납하고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카드사가 카드반납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을 본인에게 청구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A은행에서 발급받은 甲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교체하기 위해 2009. 6. 22. A은행 ○○지점에 방문, 신용카드를 반납하였고, A은행 담당직원은 반납받은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폐기함. 2009. 7. 1. 신청인은 甲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동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회원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등록을 하면 구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나, 甲카드사는 이용한도가 15,000천 원 이상인 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하지 않고 있다고 함.

□ 2009. 6. 26.과 6. 30. 가맹점'XX피아'에서 신청인의 구 신용카드로 매출(ARS승인)이 발생, 甲카드사에 860천 원짜리 매출전표 2건(총 1,720천 원)이 각각 접수되었으나, 2009. 8. 18. 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부정사용을 주장하고 甲카드사에 이의신청하였음.

○ 甲카드사는 사고조사결과 신청인이 본건 신용카드를 지인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보상을 거절하여, 신청인은 카드대금을 납부하였음.

□ 그러나 2009. 9. 4. 가맹점'X타운(주점)'에서 신청인의 구 신용카드로 또다시 매출(ARS승인)이 발생, 甲카드사에 2,775천 원짜리 매출전표 2건(총 5,550천원)이 접수됨.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2009. 6. 22 A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甲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반납•폐기 후 甲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반납했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됨. 이에 甲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甲카드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상을 거절함.

□ 그러나 본인은 A은행 ○○지점에 구 신용카드 반납 시 동 카드가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이미 결제한 1,720천 원에 대해서는 환불을, 미결제대금 5,550천 원에 대해서는 청구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 A은행 및 甲카드사는 2009. 6. 26.과 6. 30. 부정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동 매출은 신청인이 본인의 구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09. 9. 4.의 부정사용은 신청인이 甲카드사의 신용카드를 A은행에 반납하기 전, 미리 매출전표를 압인하여 작성한 후 가맹점주에게 추후에 매출전표를 접수토록 한 것이므로 동 매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결제할 책임이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적정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 거래승인은 가맹점의 단말기 등을 통해 읽혀진 회원의 카드정보가 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D/B 상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거래정지 여부, 승인요청 금액의 이용한도 초과 여부, 카드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건에 합당할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아님.

○ 본건은 신청인이 A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를 반납하고 A은행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폐기하였으므로 동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한 신용카드라고 볼 수 없고, A은행은 반납 받아 폐기한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회수 등록을 하거나 거래정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정매출이 발생한 점, 甲카드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부정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사고조사 시 동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신청인이 A은행에 신용카드를 반납하기 전 제3자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였거나 카드매출전표를 미리 작성했더라도 신용카드 반납 이후,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A은행과 甲카드사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감원은 A은행과 甲카드사에 동 금액을 보상토록 권고하였고, 양사가 모두 이를 수용(A은행 : 4,495천 원, 甲카드사 2,775천 원 부담)하여 민원을 종결함.

【시 사 점】

본건은 은행과 카드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했으면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큼. 통상 카드발급 및 교체 시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바, 은행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주요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여 사고 발생 및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7. 결제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회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대전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2004년 9월 카드사로부터 ○○백화점 제휴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것을 전화로 권유 받아 유선으로 발급 신청을 한 후 수령하고 카드사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기존에 소지 하였던 신용카드를 거래정지토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기존에 소지하였던 카드로 제3자가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현금서비스 2백만원을 부당 인출 하였는 바 이는 카드사직원의 업무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카드사에서는 2004년 9월 신청인이 카드사 대전지점으로 거래정지를 요청한 카드는 2003년 6월 이미 분실신고되어 거래정지된 카드였고 본건 부정사용카드를 제시하며 거래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 10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인출된 현금서비스는 송모씨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등이 입력되어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입금 되었고, 신청인이 과거 현금 융통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에게 현금서비스 대금 상환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 조사 결과 신용카드 거래정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본건 현금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2004년 10월 신청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통장을 신규로 개설한 후 신용카드관련 정보를 도용, 카드사가 운영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2백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 카드사의 회원규약 제7조(현금서비스) 제2항에'ARS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에 입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카드결제계좌가 아닌 제3자가 신청인 명의로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여 카드사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회원에게도 과거 현금융통업체를 이용하며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리결과】

본건 분쟁의 쟁점은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된 현금서비스 대금을 카드 결제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와 고객정보를 유출한 회원의 과실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회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금액의 50%를 카드사가 보상 하도록 조정하였다.

【시 사 점】

최근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현금서비스가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으나, 2005년 법원은“회원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하였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2-8. 여행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행자의 가방에 잠시 신용카드를 보관한 경우 규약에서 정하는 '제3자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2005년 8월 27일 가족과 함께 태국을 여행하던 중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4500-0000-0000-5100, 이하"본건 카드"라 함)를 분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20시 06분 카드사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전인 19시 56분 경 제3자에 의해 2,038,370원(미화 1,927달러)이 부정사용 되어 귀국 후 카드사로 보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양도에 의한 부정사용이라며 보상을 거절 당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조사결과 신청인은 태국여행 중 분실이나 도난이 염려되어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본인의 신용카드를 남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분실한 경우, 카드사는 이를 남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본건이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해당 한다며 보상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본건 카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신용카드 회원규약 상 회원의 책임으로 규정한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과 같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행자의 가방에 잠시 보관한 경우는 규약에서 정하는'제3자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카드사가 신청인에게 본건 카드 부정사용금액 금2,038,3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하였다.(결정일자 : 2006년 1월 10일 조정번호 : 제2005-95호)

○ 신용카드 회원규약 제20조 제3항 제2호상의'대여, 양도, 담보제공'은 신용카드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약 제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부정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제3자 보관'은 신용카드의 사용수익권이 아닌 사실상의 점유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로 규약 제3조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 보상거절사유로서의'제3자 보관'은 신용카드를 타인의 점유 관리 하에 둠으로써 부정사용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용이해 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사람의 객관적인 거래관념에 일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 본건과 같이 신용카드를 함께 여행하는 남편의 가방에 넣어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신청인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놓아두거나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공동점유로 볼 수 있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이 신용카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 사 점】

신용카드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회원규약은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약을 위하여 일방당사자인 카드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통거래약관이므로 동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약관 문언보다는 계약시의 당사자 의사를 우선시키고, 보통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 문언을 제한 해석하며,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고객보다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함과 아울러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사의 보상여부는 동 거래약관인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해석·운용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이러한 규정을 해석·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카드가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 사고보상(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2006.7.4.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을 생소한 곳에 내려주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함. 그러나 2006.7.5. 01:17~02:56 사이 24차례에 걸쳐 현금(5,131,200원)이 부정 인출되었는바, 이는 강박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이고, 그로 인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4.4.22.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06.7.4. 23: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가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신변의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을 생소한 곳에 내려주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함.

□ 2006.7.5. 01:17~2:56 사이 성수동, 중곡동, 상봉동, 이태원동에서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신청인 예금계좌(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총 24회에 걸쳐 5,131,200원이 인출되었고, 신청인은 2006.7.5.(사고발생일) 7시41분 카드사로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2006.7.6. 서울마포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본건을 강도사건이 아닌 단순 분실·도난 사건으로 접수하였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수사 진행은 어려운 상태임.

【처리결과】

□ 신청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유출하였고, 이후 만취 상태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여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늦게 한 것이므로 카드사가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본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스스로 도난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 경로에 대한 신청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태임.

□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면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면 카드소유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도난신고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난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신청인이 도난신고 지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카드사가 사고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일자 : 2006. 11. 7. 조정번호 : 제2006-72호)

【시 사 점】

최근 판례는"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 있어 회원 스스로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 25771)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분쟁 발생시 사법기관 및 경찰의 수사 결과, 회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10. 카드분실신고 후 ARS로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한 후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신용카드사가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함께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절취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한 후 부정사용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을 신용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3. 17. 오후 커피숍에서 가방을 도난당하였는데, 그 안에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휴대폰, 신분증, 집열쇠 등이 들어있었다. 신청인은 같은날 오후 8시경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신용카드사는 도난당한 신청인의 휴대폰에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절취자는 절취한 휴대폰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동 접수번호와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카드사로 전화를 걸어 카드분실신고를 해제하였다.

○ 절취자는 분실신고를 해제한 후 3월 17~18일 동안 현금서비스 800,000원, 물품구매대금(일시불) 136,400원을 부정사용하였고, 이를 알게된 신청인이 ○○카드사에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청구하자, ○○카드사는 물품구매대금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완료한 후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최초로 ○○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때 휴대폰 분실내용을 상담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분실신고가 해제되었는 바, 이는 카드사의 과실이므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부분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고당시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휴대폰 분실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절취자가 ARS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 비밀번호 오류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인터넷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

번호가 동일하여 도난당한 지갑 속에 비밀번호의 단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최근 판례는"신용카드업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받아 분실처리를 한 상태라면, 그 분실처리된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해제 신청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증 등 본인확인자료를 도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실신고와는 달리 분실해제 신청자를 신용카드 가입가맹점 등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인임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용카드 취득자가 전화를 통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14860 판결),

○ 동 판례에 비추어 영업점 방문에 의한 대면거래가 아닌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는'비대면 사고 해제 신청시 본인확인절차 강화(2006. 6.)'에 따라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나, ○○카드사는 ARS를 통한 분실신고 해제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신고시 접수번호로 본인확인을 한 것으로서, 대면확인에 준하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ARS를 통한 카드 분실신고 해제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고,

○ ○○카드사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ARS를 통해 분실신고 해제시 본인인증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전면 검토 중이며, 본 분쟁에 대해서는 현금서비스 사고금액에 대한 보상처리를 완료하였다.

【 시 사 점】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원들의 도난•분실 사고접수 해제시 지점으로 내사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ARS를 통해 분실신고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공인인증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건과 같이 절취자에 의해 분실신고가 해제되어 부정사용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1. 잘못 인도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직접 신용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이를 수령하여 신청인의 허락없이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부정사용금액은 제3자에게 신용카드를 잘못 전달한 신용카드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2005. 12. 10.경 지인 甲과 동행하여 △△카드를 신청하면서 자택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동 주소지로 배달된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甲의 여자친구인 乙이 수령하였다.

○ 甲은 동 신용카드를 1년여 동안 사용하였는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사는 이에 대한 변제를 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미수령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본인이 신용카드 실물도 보지 못하였고, 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 △△카드사는 신청인이 지인의 대리수령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배송사원은 카드수령지의 동거인에게 주민등록증 확인 후 카드를 인도하였고, 지인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인의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계약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발급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실물이 회원에게 도달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 수령을 못하였다면, 카드회사와 회원 간의 신용카드계약은 무효이고 카드회사는 제3자에게 교부되어 제3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회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아 신용카드 회원약관에도 발급 즉시 본인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용카드 배송인이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카드 회원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하며, 대여 • 양도 • 보관 • 이용위임 • 담보제공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판례에서"회원 본인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은 불법사용대금 중 30%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서울지방법원 1996.5.2. 선고 96나13476판결)하고 있는 바, 카드사에게도 신용카드회원에게 제대로 교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와 개인회원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 및 제20조(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에 의거 신청인의 카드대여에 따른 부정사용의 약관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회원에게 전액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상기의 판례를 적용하여 전체 부정사용금액의 30%를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여 종결되었다.

【시 사 점】

신용카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카드사는 본인 등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신용카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12.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 소홀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지인이 신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모르게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가맹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이므로 신용카드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A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07. 6. 4.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는 A카드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지인이 신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54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알게 되었다.

○ 신청인은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이 신용카드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정사용이 일어났음을 이유로 A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A카드사는 약관상"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설되어 발생한 부정사용"임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가맹점이 본인확인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A카드사는 신청인이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인이 이를 이용,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A카드사는 본건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맹점(VAN사 포함)에게 본인여부 확인 미실시 및 전표 미제공 등의 귀책이 있음이 드러나 해당매출을 부도처리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 본건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전화(ARS)승인 후 VAN사를 통해 DDC(Draft Data Capture) 방식으로 매입청구한 건으로, 이와 같이 가맹점이 VAN사와 DDC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이 실물전표를 VAN사 대리점으로

접수하고, VAN사 대리점은 동 압인전표를 확인한 후 DDC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본건의 경우는 VAN사 대리점이 압인전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였고,

○ 또한 가맹점은“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약관을 위반하여 신분증 확인 등의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시 사 점】

신용카드가맹점은 약관을 준수하여 본인여부 및 신용카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VAN사는 압인전표의 확인 및 보관을 철저히 하는 등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상기와 같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13. 해지 처리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용카드를 해지신청한 후 도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실물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금액 중 일부만 보상하여 주는것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년 10월 5일 A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소지하고 있던 본인명의 신용카드(이하'본건 신용카드'라 함)를 해지하였다.

□ 신청인은 해지 이후에도 본건 신용카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다니다가 2007년 10월 7일 쇼핑도중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였는데, 소매치기범은 신청인이 도난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 본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200만원을 인출해갔다.

○ 신청인은 본건 신용카드는 이미 해지처리된 카드이므로 A신용카드사에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신용카드사는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50%만 보상해 줄 것임을 통보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해지신청한 후에 부정사용된 것은 카드사에서 해지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A신용카드사는 신청인이 신용카드 해지 후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절단·폐기하여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부정사용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신용카드 해지신청 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있어 신청인에게 신용카드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여부라 할 것인데,

○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제23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에 의하면 탈회와 관련하여"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회원에게 신용카드 절단 및 폐기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신용카드는 상품•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증표로서, 신용카드사가 이러한 권한을 회원에게 부여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 실물은 플라스틱 조각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지 신청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신용카드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A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금액을 전부 보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A신용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시 사 점】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해지요청 및 기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를 해지처리하고, 카드회원은 해지, 갱신,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절단•폐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14. CD기를 통하여 직접 인출된 카드론의 유효 여부(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CD기로 카드론을 신청, 직접 인출하여 갔는데, 이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론 지급절차와 다르므로 본인의 카드론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년 11월 23일 23시 40분경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지갑 안에는 B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이하'본건 신용카드'라 함)와 본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이 함께 들어있었다.

○ 신청인의 지갑을 습득한 자가 본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7년 11월 24일 1시 28분부터 1시 54분까지 26분 동안 CD기로 14회에 걸쳐 총 1천만원의 카드론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인출해갔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본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제10조(카드론) 제4항에서"제3항의 대출금 지급신청시에는 …… 대출금이 회원의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약관과 달리 카드론이 CD기를 통하여 직접 인출되었으므로 본인의 카드론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 B신용카드사는 대부분의 전업계카드사는 계좌이체방식 이외에도 CD기를 통한 직접 지급방식으로 카드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본건 카드론은 신청인이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지갑에 함께 보관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제10조(카드론) 제3항은"대출금 지급신청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ARS, 인터넷, 지급기 등과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은 제3항의"대출금 지급신청시 에는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관상으로는 본건과 같이 카드론 대출이 CD기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CD기를 통하여 카드론대출이 실행된다고 함은 기계를 통하여 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CD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CD기를 통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제10조 제4항)의 문구에 얽매여 반드시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야만 카드론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외부 전문위원의 법률자문 결과를 감안하여,

○ CD기를 통한 카드론 지급은 유효하며, 본건 카드론 지급은 신청인이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신용카드와 함께 보관하다가 분실하여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된 것에 기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비밀번호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시 사 점】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가 신규로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약관을 이에 부합하게 즉시 변경하여 약관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5. 비밀번호 변경 이후 안심클릭서비스를 통한 부정사용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후 카드사에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나, 변경한 이후에도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는 바, 변경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8월 집안사정이 너무 어려워 한 번만 도와달라는 친척 甲의 연락을 받고 A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甲에게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 신청인은 2007. 9. 9. A카드사로부터 휴대폰 문자로 甲의 안심클릭서비스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카드비밀번호를 누설한 것이 불안하여 2007. 9.13. A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 2007. 10월 신청인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보니 한도가 초과되어 알아본 결과, 2007. 9. 10.~9. 29. 기간동안 80여 건이 결제(총 940여 만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A카드사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변경 전 사용금액인 140여 만원은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있으나, 변경 후 결제된 800여 만원은 카드사의 과실이므로 카드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본건이 안심클릭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결제된 것이며, 2007. 9. 13. 신청인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비밀번호 변경만을 요청하였을 뿐, 안심클릭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용정지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므로 동 서비스를 통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안심클릭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CVC값,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의 주요정보를 온라인상에 입력 후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하고 동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하는 바, 본건의 경우도 2007. 9. 9. 甲이 신청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하였고, 동 일자에 A카드사는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안심클릭서비스를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및 카드CVC값이 아닌 안심클릭서비스의 비밀번호 만으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인은 2007. 9. 13. A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안심클릭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건은 신용카드약관 제13조에 의거 회원이 안심클릭서비스의 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이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서 카드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시 사 점】

신용카드회원은 본인의 신용카드정보를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용도에 따라 설정한 모든 비밀번호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비밀번호 변경 요청 등 긴급한 보안 요청시 추가 보안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상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2-16. 임의 발급된 가족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A카드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갱신발급한 가족카드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사용된 부정사용금액 250만원에 대하여 카드사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관계】

□ 1990. 2. 7.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A카드사의 본인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이하"본건 가족카드"라 함)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 2007. 11. 22. A카드사는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닌 본건 가족카드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갱신발급 하여 2007. 12. 3.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신청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동 직원은 신청인에게 본건 가족카드를 전달하였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A카드사 회원약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갱신발급과 관련하여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카드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음

○ 신청인이 자신의 사무실 서랍 속에 본건 가족카드를 보관하던 중 2007. 12. 8. 불상의 피의자가 동 가족카드 등을 절취하여 도주, 2007. 12. 8. 20:19:01 B은행 명동영업부 현금지급기 등 5곳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총 250만원을 인출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22:46:01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가족카드 갱신발급에 대하여 서면 동의하지 않았는바, A카드사가 임의 발급한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 카드사는 임의 발급된 신용카드를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1주일 동안

사무실 서랍 속에 둠으로써 본건 신용카드 교부를 추인하였음은 물론 단 한 번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금액이 인출된 것은 신용카드관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바, A카드사 개인회원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신용카드 교부에 대한 추인 여부 및 신용카드 관리책임 유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신청인 또는 가족회원인 신청인의 배우자가 본건 가족카드 갱신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A카드사가 본건 가족카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A카드사 개인회원 약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반하므로 본건 가족카드 이용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A카드사는 신청인이 임의 발급된 본건 가족카드를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1주일 동안 사무실 서랍 속에 둠으로써 본건 가족카드 교부를 추인하였음은 물론 한 번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도 없이 현금서비스금액이 인출된 것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관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A카드사 개인회원 약관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본건 가족카드의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먼저 신청인은 임의 발급된 본건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 교부를 추인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판례가“상환완료 전 농지매도인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6년이상)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 미완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644 판결)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 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8. 17. 선고 2000가단 7055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1주일간' 신용카드를 보관한 점이 무효인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 한편 신용카드 관리책임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본건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의해 본건 가족카드 이용계약은 무효인바, 원칙적으로 동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약관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을 다툴 수 없는 점

- 또한 본건 가족카드가 임의 발급되었음은 물론 신용카드회원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등 A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개연성을 크게 하였는바, 신청인이 단순히 가족회원 신용카드를 1주일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의 책임을 제한키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 따라서 상기의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을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권고하였고, A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여 종결되었다.

【시 사 점】

상기 사례는 일부 카드사가 기존 고객의 확보를 위해 회원의 의사확인 없이 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분쟁으로, 카드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후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2-17. 배우자가 카드회원 본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의 책임여부(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확정(2008.6.20) 이전인 2008. 6. 6. ~ 6. 18. 사이에 민원신청인 모르게 본인의 카드로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였는 바, 본인은 매출전표상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A카드사에 즉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의 배우자는 2008. 6. 6. ~ 6. 18. 사이에 민원신청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구, 식료품 등 총 460만원을 구입하였고, 민원신청인은 카드결제일(27일)이 지난 28일 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됨

○ 민원신청인은 물품을 판매한 매도인이 신용카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정사용이 일어났음을 이유로 A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카드사는 보상을 거절하였다.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물품 매도인이 본인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A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A카드사는 본건은 민원신청인이 카드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것으로, 가족 간의 사용이고, 가구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등 민원신청인이 카드사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구입된 물품이 가사에 사용되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므로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민원신청인과 이혼 전에 신청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하였다면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동 약관에 의하면“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민원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이혼 전에 신청인 모르게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전 배우자에게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를 하여 사용하게 하였는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모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시 사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는“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및「가맹점약관」에 의하여“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 이용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카드사는가맹점 교육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분쟁의 사전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참 고 】

□ 카드채무가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인지 여부

○「민법」제832조에는“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라고정함

①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의 구입 등 법률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로 부부공동의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채무도 포함되어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구입, 자녀양육을 위한 교재의 구입, 교육비, 학원비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됨

② 카드회사가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관계에 있어서의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즉 부부일방에 대한 채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원래 가사에 관한 부부일방의 채무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즉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카드회사는 변제의 이익이 있

는 자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당연히 물품판매자를 대위하는 자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민법」제832조*의 제3자로 보아야 함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상가사에 관한 신용카드 사용 중 배우자가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대책임 부담.

○ 그러나, 카드회사는 카드회원 배우자의 부정사용인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상 계약책임인 가족의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으로써 회원에게 그 이용대금의 변제를 구할 뿐이지, 이외에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이용대금의 변제를 구할 수 없음.

□ 「민법」제827조*에 의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는 없음.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8. 이미 결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 배상 요구(한국소비자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2010. 2. 3. 미국에 거주하는 딸(윤○○)의 달라스-인천 구간 왕복항공권(○○항공)을 신청 외 ○○○투어를 통해 구매하면서 피신청인의 신용카드로 1,525,800원을 결제하였는데, 약 2분 후 동일한 가맹점에서 추가로 1,420,000원의 카드결제가 승인되었다는 SMS 휴대폰 문자를 받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부정 매출임을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 상담원은 가맹점에서만 취소처리 가능하다며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에게 매출 승인 취소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이유로 거절함.

【당사자 주장】

□ 신청인(소비자)은 항공권 결제 당시 신청 외 ○○○투어의 직원인 배○○이 카드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고, 이후 1,525,800원의 정상 매출 외에 1,420,000원의 부정 매출이 약 2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발생한 것을 SMS 휴대폰 문자로 확인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 상담원은 "가맹점과 해결할 문제이며, 카드사에는 취소처리를 해 줄 수 없으니 가맹점에 연락하라, 결제일 25일 이전에 취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가맹점에 취소 요청하라"고 하여 신청 외 ○○○투어 배○○에게 취소 요청을 하였음.

○ 당시 신청 외 배○○은 자신의 실수라며 곧 취소 처리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취소 처리 되지 않았고, 이후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대전 서부경찰서 2010-9**호 사건)을 알게 되어 결제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재차 매출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비밀번호 유출 책임만을 주장하며 매출 승인취소를 거절하고 정상매출인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미 결제되어버린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의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은 이 사건 매출은 ○○항공 항공권 발권시스템인 BSP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2자리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신청인은 타인에게 카드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카드 결제를 대리하도록 하였고, 비밀번호까지 유출해 스스로 부정사용을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바, 개인회원 약관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면책되므로 이 사건 매출에 대한 승인취소나 결제대금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사실 관계】

□ 사건 진행 경과

○ 2010. 2. 3. 11:06:24. 1,525,800원/가맹점(BSP○○항공) - 정상 매출 발생

○ 같은 날 11:08:38. 1,420,000원/가맹점(BSP○○항공) - 부정 매출 발생

○ 같은 날 11:15:5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정 매출 신고

○ 녹취록 내용

- 신청인이 11:08 승인된 142만원의 매출이 잘못된 매출이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상담원은 “취소의 경우 항공사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야지만 취소가 되며 당일 승인건은 당일 취소가 바로 가능하다며 항공사에 먼저 전화를 하라”고 안내함.

- 신청인이 “이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어 대금이 청구되고 나중에 환불받은 적이 있다며 카드사에서 직접 취소를 해줄 수 없는지” 재차 문의하자, 상담원은 “취소 권한은 없다”며 “해당 가맹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건데 오늘 승인된 건이라서 당일 취소는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항공사에서 카드사쪽으로 전화만 주어도 확인해서 바로 취소하겠다”고 함.

○ 같은 달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차 매출승인 취소 요구

○ 같은 달 18.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 외 ○○○투어에게 부정 매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같은 달 19. 신청인이 신청 외 ○○항공에게 부정 매출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항공권 발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같은 달 25. 일괄 대금 청구되어 결제됨.

□ 신청 외 ○○항공의 BSP 항공권 결제시스템 개요

○ BSP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항공권 구매 시스템으로, 항공사와 대리점(항공권 판매 여행사)이 동 시스템을 통해 항공권 예

약, 발권, 결제 및 환불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

○ 신청 외 ○○항공의 경우, 카드정보 입력 외에 ARS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행사가 신용카드 회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ARS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접속하게 되면 카드회원이 직접 카드정보 및 비밀번호 2자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어떤 전화로 ARS접속이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자가 얼마든지 다른 전화를 이용해 ARS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카드정보만 알면 결제가 가능함.

□ 카드 부정사용자 신청 외 ○○○투어 배○○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 대전 서부경찰서 2010-9**호 사건

○ 배○○은 신청 외 ○○○투어 대표와 부부 사이로 부부 모두 이 사건 등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

○ 피해자는 현재까지 38명으로 파악되고, 신청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동일한 유형으로 신청 외 ○○항공에서 매출 발생한 건이 10여 건임.

□ 피신청인 약관

○ 개인회원 약관

제6조(카드의 이용 등)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가맹점 약관

제3조(가맹점준수사항)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회사와 별도 특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5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제4조(회사의 준수사항)

①회사는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카드거래의 매출표에 대하여서는 대금을 결제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3조, 제5조, 제6조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대금결제를 유보할 수 있으며 회사의 손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5조, 제6조의 약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신용대금판매대금의 환입)

①가맹점이 회사에 제출한 매출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배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매출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표 또는 취소매출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회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매입대금 및 부도이자를 환입함에 있어, 회사는 가맹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과의 분쟁)

①회원과 카드 등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신청인은 개인회원 약관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이 면책되므로 이 사건 매출에 대한 승인취소나 결제대금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3항과의 유기적인 해석상 위 약관 조항은 피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신용카드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비밀번호 대조, 확인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는 취지이지 피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어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 또한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분실·도난 등 사고로

인한 부정매출 발생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맹점 약관상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될 때가지 대금결제를 유보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회원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는 한편 직접 서명이 불가능한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본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제도 외에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회원에게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실시하여 매출승인 후 결제 이전에 한번 더 부정매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부정매출 즉시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점이 가맹점약관 제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상적인 가맹점이라는 신뢰 하에 신청인에게 가맹점과 연락하여 해결할 것만을 안내하였고, 이후 실제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인 신청 외 배○○이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대전 서부경찰서 2010-9**호 사건)을 알게 되어 결제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재차 매출 승인 취소를 요구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대금결제를 유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경위를 확인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정상매출인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스스로 도입, 운영하는 각종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 당시 신청 외 배○○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비롯한 카드정보를 알려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결제된 금 1,420,000원의 90%인 금 1,278,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27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0.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278,000원을 지급한다.

3. 신용카드 거래 관련

3-1.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1)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도6859, 판결]

【판시사항】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공1996상, 1475)

3-2.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사유】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업자인 OO카드 주식회사라고 할 것인데,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OO카드 주식회사로 보면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를 위와 같이 파악한 것으로 이해되고, 비록 원심판결에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공2005하, 1522)

3-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1조 , 제741조 , 제748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4.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및 처분허락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4]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조, 제6조 / [2] 민법 제5조, 제6조 / [3] 민법 제5조, 제6조 / [4] 민법 제5조, 제6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5.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1925, 판결]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3-6. 당초 설명과 달리 수수료 청구된 선포인트 결제서비스 취소 요구(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 카드발급 시 내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카드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모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내비게이션을 제공받았음. 그러나, 발급 후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내비게이션 대금 50만 원이 '선포인트 결제' 이용대금으로 표시돼 청구된 것을 알게 됨.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내비게이션을 포인트로 구매한것'이라며 50만 포인트를 신청인이 3년 내 갚아야 하며 3년 내 카드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로 이를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남은 포인트 잔액은 신청인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이자 또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됨.

【쟁점사항】

선포인트 할인 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경위】

'선포인트 결제' 제도는 상품 구입 시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매월 포인트 잔액을 차감시켜 나가는 제도임.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카드이용실적이 많지 않을 경우 약정 기간 내 포인트 잔액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포인트 잔액은 현금으로 갚아야 하며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 '선포인트 결제' 이용계약이 세부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와 함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음. 내비게이션 제공이 '선포인트 결제' 서비스 이용에 의한 것임을 카드사가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50만 포인트의 선포인트 결제 서비스 이용 계약은 취소처리 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권고함.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포인트 이용 계약을 취소 처리하고, 이미 제공된 내비게이션은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합의함.

4. 철회·항변관련

4-1. 신용카드 수기거래[1] 관련 결제취소 가능여부(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A사로부터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권유받아 신용카드로 896,000원을 결제하였는데, 동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환불에 대한 내용도 권유당시와 다르므로 동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결제한 대금은 반환받아야 한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6월 A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A사는 신청인에게 896,000원을 내고 어학교재를 구입하면 무료통화권 200분을 증정해주고, 각종 할인혜택(차량구입시, 콘도사용시, 영화관람시 등) 등의 부가서비스를 준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신청인은 B카드사 신용카드로 896,0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 그러나, 가입 이후 신청인은 A사로부터 학습지 몇 권을 받은 것이 전부였고, 불안해진 신청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유사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7. 12월 A사 및 B카드사 등에 내용 증명을 보내 동 계약의 무효 및 결제대금반환을 요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사는 본건 계약 체결시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바 없으므로 계약의 무효 및 결제대금 반환을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7일이 경과하였으므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철회시기가 지났고, 2007. 12월에 이미 본건 할부결제가 끝났기때문에 항변권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1) 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유형으로서 학습지, 회원권 등의 전화권유판매에서 많이 사용됨

【처리결과】

□ 본건과 같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관련법규상 신청인의 철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거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동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7일)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본건의 경우 A사가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A사에게 있는데 A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에 B카드사는 A사와 협의하여 매출취소처리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결제대금을 환불하여 주었다.

【시 사 점】

전화판매와 같은 신용카드 수기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카드사는 이러한 분쟁발생시 관련법규상에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철회권 및 항변권 등)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2. 네비게이션 할부금 잔액 지급책임 유무(금융감독원)

【신청요지】

휴대폰 요금을 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며칠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카드사에 지불정지를 요청하였는데도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2. 28. A사 영업사원 甲이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휴대폰 요금을 A사로 납부하여 주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 甲은 신청인에게 신용카드로 승인을 따야 된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왜 승인을 따야 하냐고 묻자 甲은 승인후에 바로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여, 신청인은 甲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 신청인이 甲에게 받은 구매계약서 상에는 설치제품 란에 “터치내장형 네비게이션” “DMB set” “통화요금이용(396만원)” “의무기간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약사항 란에 “통화요금은 ○○○임으로 의무기간내 해지 불가능 (통화권 증정) 이전설치 1회 무료, 15～20일 이내 통화요금 지로 변경 (변경시 카드 삭제) 불이행시 위약금 없이 해지”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은 통화요금이용권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통화요금은 계속 지로로 납부하여 왔다.

□ 신청인은 며칠후에 뉴스에서 네비게이션 사기단 관련 방송을 보고 알아본 결과 본인 명의 B카드사 신용카드로 3,2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7. 3. 9. B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07. 3. 12. A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사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A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카드사에 이의신청하였는데 계속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할부금은 면제되어야 하며, 기납입한 할부금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할부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거나 본 계약 목적물이 신청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하지만 단순 사기성 거래를 사유로 하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 또는 항변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권 또는 항변권 대상에 해당하여 할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기한내에 청약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외부 분쟁조정 전문위원의 법률자문 결과를 감안하여 신청인과 카드사간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 토록 하였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본건 할부계약에서 신청인이 甲으로부터 받은 구매계약서 상에 322만원을 지급하고 네비게이션과 통화요금이용권(396만원)을 받는 것이 본건 할부계약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목적물의 일부인 통화요금이용권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목적물의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사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 사 점】

□ 최근 네비게이션이나 어학교재 등에 대한 철회·항변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이러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금을 설정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3.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아파트 샤시공사대금의 항변권유무(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2008. 6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샤시 및 확장공사(인테리어) 계약(총공사금액 1,66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였다가 해당 업체의 부도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A카드사에 할부항변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다.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은 2008. 8. 5.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체결 업체 및 A카드사에 계약 취소 및 할부항변권을 요구함

○ A카드사는 가맹점과 접촉하여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맹점의 부도로 직접적인 처리는 어려우며, 추후 인수업체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함

○ 이후 인수업체를 통한 공사시 추가금(10% 정도)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가맹점을 통한 매출취소는 불가능한 상태임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부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6개월 할부거래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카드사가 임의적으로 가맹점에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고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 A카드사는 본건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할부항변권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인수업체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종전 계약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동 계약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라 할것인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목적물) 제7호에 의거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은 동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 본건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을 신청인이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시 사 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할부거래상 철회권과 항변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매수인(카드회원)은 신용제공자인 카드회사와 대립적 관계인 바, 카드사에서는 카드회원에게 할부항변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 동건 처리 중 A카드사 홈페이지 상의 할부항변권에 대한 안내문 확인결과, 할부항변권의 제한대상이 되는 거래의 예시 중 본건의 경우와 같이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거래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 본원의 지도 후 A카드사는 홈페이지 상의 안내문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4-4.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 (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2. 20. 주식회사 ○○물산(이하 '매도인'이라 함) 방문판매사원이 휴대폰 통화료를 매도인을 통해 납부하면 신청인 휴대폰에 통화료 4,000,000원 상당을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하여 피신청인 발행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신청인 주장

매도인 방문판매원은 신청인이 휴대폰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번호를 통해 사용하고 요금도 매도인을 통해 납부하면 4,000,000원을 신청인 휴대폰에 먼저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하여 3,95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신청인 휴대폰에 4,000,000원을 충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은 폐업하였고, 내비게이션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2007. 2.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에게 항변권을 통지하였으므로 잔여할부금 청구 취소를 요구함.

□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폰 통화료 충전은 같은 법에서 정한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내비게이션은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를 통해 수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항변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

□ 구매계약서

○ 판매회사 : 주식회사 ○○물산
○ 계약자 : 신청인
○ 설치제품 : DMB FULL SET 붙박이 7인치
○ 결제방법 : 신청인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 인수확인 :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뒷면 '고객에게 알림'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였으며 상기상품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 수기기재사항 : '휴대폰 통화권 400만원 입금'

□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 진술 중심)

○ 2006. 12.경 매도인 방문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전화 및 방문을 하여 휴대폰 통화권 제공에 대해 설명하면서 DMB 내비게이션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음.

- 신청인이 특정 번호(080-384-****)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신청인의 휴대폰 요금을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이득을 보게 되므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우선 신청인 납부계좌 개설을 위해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결제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4,000,000원 상당의 통화권을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도 제공하겠다고 함.(신청인 주장)

○ 2006. 12. 20. 신청인은 매도인 방문판매원과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비게이션을 신청인 차량에 설치하였으며 피신청인 발행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두 번 나누어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2007. 1. 29. 매도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07. 1. 19. 부도처리 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음.

- 통지문 내용 : '제품(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1년동안 A/S가 가능하며 통화권은 고객들 휴대폰에 각기 정상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음.'

○ 2007. 2. 2. 신청인이 통화권이 충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잔액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제품(내비게이션) 상태 (신청인 진술)

신청인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설치 후 2개월 정도 작동하다 고장이 나서 신청인이 제조사 '(주)○○디지털'에 확인해 보니 동 제품은 약 2년 전에 만든 제품으로 현재 시중가격은 대략 200,000원 내외이며, 제조사 '(주)○○디지털'에서는 아직까지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함.

□ 신용카드 결제 및 잔여 할부금 현황 (피신청인 제출)

○ 결제일 : 2006. 12. 20.

○ 결제금액 : 1,960,000원 / 1,990,000원
○ 대금지급 방식 : 12개월 할부
○ 2007. 2. 2.(할부금 잔액 지급거절 의사표시 서면 발송) 할부잔액 : 3,620,826원
○ 2007. 5. 28. 할부잔액 : 2,304,162원

□ 가맹점 현황 (피신청인 제출)
○ 상호 및 주소 : ○○물산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 대표자 : 조○○
○ 업종, 업태(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 생활가전, 종합잡화
○ 가맹점 개설일 : 2006. 9. 11.
○ 가맹점 정지일(폐업) : 2007. 2. 6.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의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책임 유무】
□ 신청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및 휴대폰 통화권 4,000,000원을 제공받는 조건 아래 3,95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므로 내비게이션 인도 및 휴대폰 통화권 제공은 할부로 지불하는 3,950,000원에 대한 대가적 채무들이고, 그 중에서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휴대폰 통화권 제공이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무로서 인정되는바,

□ 매도인은 2006. 12. 20. 신청인에게 저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통화권 4,000,000원 상당이라는 이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07. 1. 19. 부도처리 및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달 29.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휴대폰 통화권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매도인은 휴대폰 통화권을 충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문에 기재하였지만 신청인은 그와 같은 통지문을 받을 때까지 통화권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준 전화번호 '080-384-****'로는 이미 통화 불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제1항 제2호 소정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 또한, 신청인이 비록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내비게이션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부도처리 및 폐업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인 휴대폰 통화권제공이라는 채무는 사실상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인다.

【책임 범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7. 2. 2.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후의 할부금 잔액 3,620,826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이미 1,316,6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할부금 2,304,162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3.까지 신청인에게 2007. 2. 2. 이후 할부금 3,620,826원 중 이미 지급받은 1,316,664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2,304,162원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상당하다.

□ 피신청인은 2007. 7. 3.까지 신청인에게 할부금 금 3,620,826원 중에서 2007. 2. 2. 이후 지급받은 금 1,316,664원을 반환하고, 금 2,304,162원은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신용카드 관련 기타

5-1.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유효기간(2009. 9. 30.)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상 피고에게 미리 유보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1항에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제24조 제2항에 카드사는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 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와 관련하여 규약에 규정된 조항의 변경시 제1항의 통지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 및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

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용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24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피고가 2005. 3. 1. 이후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2. 신용카드 모집에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업무관련성의 의미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같은 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해 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2항 제4호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

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공1983, 76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공1997상, 847)

5-3.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인지 여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판시사항】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유】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을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나(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4. 도난당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보상 범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 민원신청인은 2008년 ○월 ○일 회식 후, 새벽 4시경 본인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이 귀가하기 전 A사에 회원 연락처로 등록한 본인의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오류 문자메세지를 3회나 수신함. 이에 A사에 신청인(본인회원) 대신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A사 상담직원이 카드 분실 여부 미확인 및 본인회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분실신고 접수를 거절함.

○ 이에 동 카드의 거래가 정지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이 발생되었으며, 부정인출된 예금 4,819,200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 2008년 ○월 ○일

○ 01:30분경 : 민원신청인이 만취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이후, 강도를 당하여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등을 빼앗김.
○ 02:48:15 : 강도혐의자가 A사 ARS에 민원신청인의 명의로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오류로 접속불가(비밀번호 입력오류 사실이 민원신청인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1차 통보됨)
○ 02:50:06 : 강도혐의자가 A사 ARS에 2차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오류로 접속불가(비밀번호 입력오류 사실이 민원신청인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2차 통보됨)
○ 02:55:49 :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A사 ARS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함(비밀번호 입력오류 사실이 민원신청인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3차 통보됨).
○ 02:58:31 : 이에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업무용 ARS를 통해 상담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 접수를 거절함.
○ 03:41~03:53 : 강도혐의자가 ATM에서 4,819,200원(수수료 포함)의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인출함.

○ 03:55~03:56 : 강도혐의자가 ATM에서 600,000원의 현금서비스 금액을 인출함(A사는 현금서비스 부정사용금액(600,000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상 조치함).

○ 04:08 : 민원신청인의 배우자는 귀가한 신청인으로부터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A사 ARS를 통해 카드를 분실 신고함.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가족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카드 비밀번호 입력오류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배우자(가족회원)가 피신청인(A사)의 콜센타에 카드 분실신고를 요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상담직원이 이를 거절한 것은 피신청인의 명백한 잘못인 바, 이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피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피신청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에 의거,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통지의 주체를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현금카드 이용약정서 제3조에서도“이용자가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오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 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 주체를 이용자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담직원이 이를 이유로 카드 분실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가의 여부임.

(1)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카드 등 접근매체 분실시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족회원(민원신청인의 배우자)이‘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만일,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가족회원이'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이용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그 이외에는 당연히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용자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당연히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이용자의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약관 등 각종 규정 및 신의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제4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부정인출된 돈은 예금이 아닌 대출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

○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인회원 이외에도 그 가족들의 카드 분실신고까지 접수•처리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내부기준에 의하면, 현금(예금 또는 대출금)인출용 비밀번호의 경우 입력오류가 3회 연속 발생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사건 당일 3회(02:48, 02:50, 02:55) 연속 비밀번호의 입력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카드 비밀번호 입력오류 횟수가 현금인출의 경우 연속 3회,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속 5회이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내부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본건에 있어 가족회원은 은행업무용 전화 (15××-××××)가 아닌 카드업무용 전화번호(080-×××-××××)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후자의 기준(5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신청인의 카드 비밀번호는 현금인출과 현금서비스의 경우 모두 동일하고, 전화번호를 2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편의 또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단지 카드업무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5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본건에 있어 카드 분실•도난 신고자(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본인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피신청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의 휴대폰으로 수신 받은 것으로 볼 때, 그는 본인회원의 가족이거나 최소한 본인회원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카드분실 신고시점이 새벽 3시경이고, 신고 당시 신고자가'비밀번호 입력오류 메시지가 계속 휴대폰으로 전송된다는 사실'과'본인회원인 남편이 아직 귀가를 하지 않고 있고,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등을 피신청인의 상담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본인회원인 신청인의 사고 개연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여 잠정적인 사용정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2) 손해배상책임 및 그 책임의 배분

□ 피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청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민원신청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으로 볼 때,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위반), 또한 신청인이 범인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경우 그 누설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보호규정이 없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금액 4,819,200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3,855,36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원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시 사 점】

□ 본건은 A사와 민원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보상처리됨.

○ A사는 현금서비스 비밀번호 입력 3회 오류시 현금지급이 정지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고, 상담직원이 분실신고 접수시 회원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접수거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 카드사 및 은행 등은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야간에 카드분실 신고 접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을 감안하여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임.

5-5.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이의(금융감독원)

【신청요지】

□ 민원신청인은 2004년 12월 본인이 사용 중이던 A카드사 신용카드를 해지하였으나, 2007년 2월 A카드사에 다시 카드발급을 신청함. 그러나 A카드사는 민원신청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하였으나, 1개월 후 인 2007년 3월 상담원이 민원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줌. 민원신청인은 새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A카드사와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방식에 대하여는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함.

○ 2004년 12월(신용카드 해지 이전) 민원인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은 리볼빙결제[2]였으며, 2007년 3월 새로운 카드발급 시 A카드사가 민원신청인에게 결제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기존 리볼빙결제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인이 A카드사에 2년간 리볼빙이자금액(54만원)을 부당하게 결제한 바, 동 금액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은 2003년 12월 12일 카드이용대금 연체로 A카드사와 대환론을 약정하고, 2003년 12월 24일부터 리볼빙결제(최소금액 5만 원) 방식으로 대환론을 상환해왔으며, 2004년 12월 13일 대환론 잔액을 전액상환함.

※ 민원신청인은 대환론 전액상환 시 카드계약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A카드사는 민원신청인이 카드 계약을 해지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5 ~ 2006년(2년간) A카드사는 민원신청인에게 카드연회비를 청구한 적이 없음.

□ 이에 녹취내용을 확인한 바, 2007년 3월 카드발급 시 A카드사 상담원이 민원 신청인에게"카드발급 신청하신 것 몇 가지만 여쭙고 안전하게 발송하겠다"고하며, 카드가 신규발급인지 재발급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카드비밀번호와 결제계좌는 예전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고 안내함. 이에 민원신청인은 결제계좌를"변경하겠다"고 하였으며, A카드사는 결제계좌 및 비밀번호를 변경 처리한 후, 2007년 3월 5일 민원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발급함.

---

2) 카드이용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요청한 결제비율에 따라 원금의 일부와 소정의 이자만 결제하면, 잔여 이용한도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민원신청인은 2007년 3월 카드발급 이후 리볼빙결제방식으로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다가 2009년 1월 28일 리볼빙결제 해지신청을 하여 일반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2004년 12월 A카드사에 회원탈회를 신청하였음에도 A카드사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3월 카드발급 시 A카드사 상담원이 민원 신청인에게 결제방식을 일반결제방식으로 할 것인지 리볼빙결제방식으로 할 것인지 물어보고, 민원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종전 리볼빙결제방식을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반면, A카드사는 민원신청인이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탈회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2007년 3월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기존 회원에게 카드를 재발급해 줌. 민원신청인은 2007년 5월 ~ 2009년 1월까지 카드이용대금명세서상에 청구된 리볼빙금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리볼빙결제에 따른 금융혜택을 보았으므로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음.

○ 다만, 민원해소차원에서 당시 적용된 리볼빙이자율(22%)과 카드론이자율(15.9%)의 차액 15만 원을 민원신청인에게 보상할 용의는 있음.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민원신청인이 2004년 12월 A카드사 회원을 탈회하였는지 여부와 2007년 3월 A카드사와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임.

○ 민원신청인은 2004년 12월 이후 A카드사 전산상 회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연회비*도 납부한 적이 없어 A카드사가 민원신청인의 탈회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유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5월 이후 신용카드표준약관에는“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종전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음.

○ A카드사 상담원이 민원신청인과 통화한 녹취내용에는“민원신청인이 카드를 신청”(신규 회원가입 시도 동일 멘트)하였다고 하였으나, 카드가 “신규발급”또는“재발급”된다는 표현이 없었음. 또한, 결제계좌와 비밀번호는 종전대로 할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종전 결제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그러나, 민원신청인은 이미 리볼빙결제방식으로 2년간 결제하였고, 이에 리볼빙결제방식에 의한 금융수혜를 보았다는 A카드사의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어, A카드사가 리볼빙이자금액 54만 원 중 50%인 27만 원을 민원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취하되었음.

【시 사 점】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신규발급, 재발급, 추가발급 시 상담원이 명확하게 카드발급의 종류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결제계좌, 비밀번호,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에 대해 본인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해야할 것임.

5-6.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인출한 현금의 적용환율에 대한 이의(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2008년 10월 30일 캄보디아에 있는 ATM기에서 A카드사의 체크카드로 현금 2,000달러를 인출함. 그러나 민원신청인은 A카드사가 인출시점의 전신환매도율(이하'환율')이 아닌 당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30만 원이 더 출금되었다며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함.

【사실관계】

민원신청인은 2008년 10월 30일 A카드사의 체크카드로 캄보디아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2,000달러를 인출함. 인출 당시 환율은 1,277.10원이었으나, A카드사는 당일 최초 고시환율인 1,428.10원을 적용하여 총 2,892,132원*을 민원신청인의 결제계좌에서 출금함.

* 해외 ATM기 이용수수료(국제카드 브랜드사 수수료 1% 및 3달러) 포함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은행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는데, A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당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하였고, 환율적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한 바 없으므로, A카드사가 과다 인출해간 30만 원 상당액을 민원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A카드사는 체크카드약관상에「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를 이용한 카드대금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 달러로 환산된 후, 거래유형별로 승인거래의 경우 카드거래 전일자, 미승인거래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전항의 청구금액에는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수수료 및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가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A카드사 홈페이지 해외이용안내 상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 본 건의 핵심은 A카드사가 인출한 금액이 체크카드약관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데,

○ A카드사가 국제카드 브랜드사 수수료 및 카드사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약관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 달러로 환산된 후, 거래유형별로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A카드사는 카드거래일의 최초 고시환율이 전일자의 가중평균 고시환율이므로 약관상 전일자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 환율은 일 중에도 수차례 변경 고시되는 것이므로 약관에서 정한 전일자 환율이 어느 시점에 고시된 환율을 말하는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A카드사는 원만한 분쟁해결를 위하여, 전일자 환율 중 민원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민원신청인 결제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의 차액인 34,237원을 민원신청인에게 돌려줄 의향을 밝혀, 동 금액을 민원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본 건을 종결처리함.

【시 사 점】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인데, 금융회사별로 동일 사안에 대한 환율적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각 금융회사는 관련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이며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5-7.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어 6개월 할부매출(647만 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 인출된 1회차 할부금(114만 806원)의 반환 및 잔여할부금 청구중단을 요청함.

【사실관계】

□ 2009년 1월 17일 17:53경 민원신청인 명의의 A신용카드가'K상사'라는 가맹점에서 6개월 할부로 부정매출(647만 원)이 발생된 후, 2월 5일 민원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할부 1회차 대금 114만 806원(할부수수료 포함)이 인출됨.

○ 민원신청인은 2월 27일 상기 카드매출은 부정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카드사에 인출금 반환과 잔여할부금의 청구중단을 서면 요청함.

□ A카드사는 2 ~ 6회차 할부대금의 추심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민원신청인이'H유통'에 후원인 J씨의 권유로 입사한 후 위'K상사'에서'판매용물품''(H유통'사무실에 보관)을 구매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민원신청인과 J씨와의 3자 대면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함.

○ J씨는 2009년 8월 19일 민원신청인이 A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본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A카드사에 제출하였음.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매출(647만 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 해당 가맹점('K상사')은 전혀 모르는 곳이고 카드전표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구매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A카드사가 부당하게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 A카드사는 카드서명이 상이한 점과 구매물품을 민원신청인이 아닌'H유통'이 보관 중인 점은 인정되나, 조사결과 본건의 카드매출은 민원신청인이 '판매용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민원신청인의 의사에 반한'부정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을 파악함. 특히, 민원신청인과'H유통'의 관계

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음.

【처리결과】

□ 본건은 결국 민원신청인과'H유통'의 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못하였으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바, A카드사가 민원신청인의 요청을 수용, 기 인출된 1회차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할부금의 청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본건 분쟁이 해결되었음.

○ 'A카드사「가맹점약관」'위반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2) 가맹점은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없거나 거래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건의 경우,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된다고 볼 수 없고 거래금액이 647만 원으로 50만 원을 초과함에도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제4조(금지된 거래) 가맹점은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신청서에 기재된 상호 또는 사업체와 상이한 업체가 이행한 거래

- 본건의 경우, 매출전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상호는'K상사'이나 실제 물품거래는'H유통'에서 발생한 것인 바, 위 약관조항에 위반된 카드거래임('H유통'은 가맹점 규모가 작아 6개월 할부매출이 불가능하여 'K상사'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함).

【시 사 점】

□ 신용카드거래에 있어 부정사용이 자주 문제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가맹점들이 매출에만 집중한 나머지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고 타 가맹점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또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교육을 강화하여 가맹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주지시키는 한편, 준수사항 위반 시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8. 카드사가 연대보증인이 퇴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퇴임 후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OO 인터내셔날(주)'의 대표이사 재직 중 법인카드 발급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은 사실이나, 2000.10.11.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거래 정지신고를 하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임의로 법인카드를 재발급해 준 후 재발급 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0.2.10. 'OO 인터내셔날(주)'의 법인카드 발급(법인카드3매 발급)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2000.9.22. 발급 받은 법인카드 3매를 모두 거래정지 신고를 한 후 2000.10.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관련 주식을 모두 반납하였음.

□ 그러나 2000.12.19. 법인의 요청으로 법인카드 2매가 재발급(사유 : 분실)되었으며, 2002.7.19. 신청인이 동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정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8.2. 법인카드 1매가 추가로 재발급(사유 : 분실)되었으며, 이후 재발급 된 법인카드로 사용된 신용카드대금(2004년3~4월 사용분)이 연체되자 카드사가 신청인에게 동 금액의 변제를 요구함.

□ 신청인은 2차례에 걸친 거래정지 신고를 통해 보증 해지의사를 충분히 밝혔으므로 보증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사는 단순 거래정지 신고만으로는 보증 해지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바, 법인카드 약관 내용대로 카드 유효기간(2005년1월)까지 발생한 전 채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함.

【처리결과】

□ 비록 법인카드 약관상 보증기간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카드 유효기간)동안 설정된 한도액 내에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보증 계약과 해지권 발생 및 피보증채무의 확정에 관한한 논리적

체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신청인의 대표이사 퇴임 후에는 당연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관련 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89다카1381, 95다17533, 98다11826)의 일관된 입장임,

□ 거래정지 신고 이후 법인에 카드를 재발급(2회) 해 주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충분히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당시 법인 또는 신청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인이 퇴직(2000.10.11)한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카드 대금(2004.3~4월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카드사가 업무처리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거래정지를 요청한 이후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토록 합의권고 하였으며, 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되었다.

【시 사 점】

□ 기업의 법인카드 발급신청시 카드사는 해당 법인의 영업기간·자산규모·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발급 조건에 미달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법인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 그러나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에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동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역시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 없이 관행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고용 임원에게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바, 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시 연대보 증인에게 카드 발급 및 보증내역,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 후 카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그리고 카드사가 법인카드 발급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관련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실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본건과 같이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등 경영상황에 대한 특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카드사가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거나 보증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5-9. 위조된 신용카드로 예금이 인출되었을 경우 회원의 과실이 없다면 은행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OO은행 신용카드를 본인이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7. 16. 서울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1,200,000원, 예금 4,348,300원이 부당인출 되었다. 이에 은행은 현금서비스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예금인출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거절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 2. 15. 피신청인의 OO지점을 통하여 신청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OO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신청인이 위 OO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2006. 7. 16. OO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 등록된 후, 수협 방이동지점 CD기에서 2,103,600원, 조흥은행 강동지점 무인 CD기에서 2,244,800원, 총4,348,400원이 카드를 통하여 신청인의 OO은행 계좌에서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이 인출 되었는데, CD기에 찍힌 카드실물의 사진에 따르면, 인출에 사용된 카드는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9***-****-****-1100)이며, 체크카드 M/S에 신청인의 위OO카드 정보가 복제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신청인은 2006. 6월말 포탈사이트 다음쇼핑몰인 다음온캣에서 건강식품 글루코사민을 주문하였는데, 같은 달 28일 판매자가 신청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다음 쇼핑몰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아 직거래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며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카드승인(swipe)을 시도 하였으나"삑"소리가 나며 승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현금으로 입금을한 사실이 있음

○ 수사결과 현재까지 본건을 포함하여 11건의 동일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범인 중 1명이 검거되어 글루코사민 결제를 위한 카드조회기 승인 시도시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를 위조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비밀번호 사용경위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함. 또한 범인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해자는 1인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신청인은 비밀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위조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부당인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OO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은행은「예금거래약관」에"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금카드이용약정서」에"은행에 책임이 없는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본건의 쟁점은 위조카드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카드소유자와 은행 간에 어떠한 약관을 적용할 것인지와 약관에 따른 책임의 배분 문제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약관 적용문제에 대한 판단

OO은행은 본건 사고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더라도 예금이 인출된 것이므로「예금거래기본약관」과「현금카드이용약정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예금거래기본약관」이 모든 예금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나, 본건 신용카드 발급시 적용된「개인회원규약」제8조는"OO은행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하신 회원의 경우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하여 드리며, 이 경우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 외에 결제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카드의 기능 중 하나로 예금인출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통한 예금인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바,

- 「 개인회원규약」제26조의"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

니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예금인출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의 의미를 갖는「예금거래기본약관」보다 특별규정의 의미를 갖는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 현금카드이용약정서의 내용은 본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약관에 따른 책임의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

「개인회원규약」제8조는 정상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된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본건의 경우는 제19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 인출당시 현금자동지급기에 압인된 카드전표와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3자가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책임은 피신청인 은행에게 있다 할 것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 및「개인회원규약」제19조의 규정 형태상 위조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설되었음을 은행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글루코사민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 누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위조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피신청인(OO은행)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OO은행)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 4,348,400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5-10. 가맹점이 위조된 해외카드 번호로 수기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사고 보상(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은 지난 2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아프리카 - 유럽 노선 항공권을 주문받고 신용카드 및 신분증 사본을 송부 받아 매출전표에 카드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여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였다. 그러나 전표를 매입한 △△카드사가 본건이 위조카드에 의한 매출이라며 해당 항공권 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카드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카드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의 구제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OOO 여행사'대표로서 △△카드사와 수기특약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및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2007년 2월 런던에 거주하는 부정사용자가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위조한 후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항공권 구입을 의뢰하였고, 신청인은 카드실물에 대한 확인 없이 이메일로 송부된 신용카드 사본 상 해외카드 번호로 수기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카드사로부터 KEY-IN 방식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 △△카드사로 해외전표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카드회원은 매출 발생 이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부당하게청구되었다며 해외카드발급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해외카드발급사는 전표를 매입한 △△카드사에게 부도신청(Charge Back)을 하였고, 이에 △△카드사는 신청인에게 본건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본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카드사가 신청인에게 기약정한 특약에 의거 해당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리결과】

□ 신청인은 수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고, 본건은 △△카드사로부터 정당하게 거래승인을 받아 매출전표를 접수하였는 바, 카드사가 부

정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카드사와 5년 전 수기특약가맹점계약[3]을 체결한 후 그동안 항공권 및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여 왔고, 동 수기특약에'가맹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정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신용카드국제거래규약」에'회원이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본인 미사용을 주장할 경우, 전표매입카드사가 본인 사용의 증거로 압인전표 또는 SWIPE 승인전표를 제시할 경우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카드실물 확인 없이 카드번호를 매출전표에 수기로 기입한 후 KEY-IN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 항공권을 판매함으로써「신용카드국제거래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본 건은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사용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과「가맹점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시 사 점】

본건 발생 당시 유사한 사기 사건이 수건 발생하였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나 범인 검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회원 • 가맹점 • 신용카드사 3자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인 바, 이러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해외카드 매출에 따른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 실물을 조회기에 통과시켜 Swipe 방식으로 승인을 받거나 매출전표에 카드를 압인하여 고객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여행·통신판매 업종의 경우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카드실물 압인(또는 Swipe 승인)과 서명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가맹점이 본인여부 확인 등 카드 거래의 유효성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래방식

5-11.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조정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였고 이를 취득한 자가 동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전액 받아갔는데, 동 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증액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 동의없이 한도 증액으로 인한 추가 피해금액을 신용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4. 8. 반포에서 ○○카드사 발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취득한 자가 같은 날 14:52경 동 카드로 현금서비스(50만원)를 받아갔고, 신청인은 같은 날 15:08 카드분실 신고를 하였다.

○ 한편 동 카드의 총 이용한도는 14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는 20만원이었는데, 2007. 2. 1. ○○카드사가 신청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총한도내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2007. 1. 31.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SMS를 발송* 하여 통보하였다.

*SMS발송 내용"2/1일 고객님의 현금서비스 한도 50만원으로 상향 예정"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최초 현금서비스 한도가 20만원이었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고금액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총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상향조정 내용을 SMS를 통해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본건은 신청인의 비밀번호 유출 등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카드사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카드사의 책임여부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③항에 의하면 이용한도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사「개인회원약관」제10조(카드의이용한도) ②항 1호에 의하면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카드사는 총 이용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의 한도만 상향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통보(SMS 발송, 사용대금명세서상에 명시 등)하고 회원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도 상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 본건과 같이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원 동의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개선·보완토록 권고하였고, 본건의 경우는 카드사와 신청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시 사 점】

현금서비스는 부여된 한도만큼 현금이 융통되고, 무분별한 한도 상향은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도 책정시 주의가 필요한 바, 총 이용한도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 한도 상향시 회원의 사전 동의 후 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5-12. 신용보장서비스 관련 설명시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경우 이에 따른 보상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용카드사 직원이 신용보장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면서 할부금융이 동 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용카드사는 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2005.10.18. △△카드사 직원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신용보장서비스[4]를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자, 신청인은 가입의사를 밝혔고, 며칠 후 △△카드사로부터 가입증명서 및 약관을 교부받았다.

○ 2006년 1월 신청인은 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하자, 동 서비스의 제공(△△카드사에 대한 총채무액 면제)을 요구하였으나, △△카드사는 신청인의 총채무액(2,900만원) 중 1,500만원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할부금융임을 이유로 면제를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서비스 가입 당시 △△카드사 직원이 할부금융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대출금액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카드 신청인에게 교부된 약관상에 할부금융은 서비스 대상 채무에서 제외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건 대출은 신용카드회원 외에도 누구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할부금융대출에 해당하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카드사 직원이 신용보장서비스의 가입권유시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경우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라

---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의 경우 카드사에 결제할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일을 연기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입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서비스이용료로 납입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 조사결과, 본건관련 대출은 대출내역서상에'할부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여신전문금융법」상'할부금융'이 아니라, 원리금을 일정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형식의'일반대출'로서, 카드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고객도 별도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확인되었고,

○ 카드사 직원이 신청인에게 신용보장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한 총결제금액 모두를 면제"라고 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특정하였으므로, 동 서비스가 일반대출인 본건 대출까지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 직원이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쓰신 금액 모두를 면제"라는 표현이 있고, 카드사의 담당자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의 개념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할 당시 다소 혼란을 초래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외부 전문위원의 법률자문결과를 감안하여 신청인과 카드사 간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토록 하였다.

【시 사 점】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장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카드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동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13. 체크카드에 의한 해외현금 인출 이의신청시 선보상[5] 가능여부(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2008. 5. 4. ~ 5. 5. 프랑스 파리에서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인출을 시도한 결과, 통장에서 인출은 되고 현금은 받지 못하여 A카드사에 긴급구호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한국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유함. 이에 신청인은 귀국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카드사가 즉시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체크카드로 2008. 5. 4. 200유로, 2008. 5. 5. 200유로 등 현금인출을 시도한 후 2008. 5. 4. 20:55 A카드사 콜센타로 전화하여 프랑스 파리의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을 시도하였으나 현금은 지급되지 않고 예금계좌에서 인출만 되었다고 연락을 함. 이에 상담원은 ATM기 에러로 인하여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서 즉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통상 2 ~ 3일내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며 혹시 동 기간 내 환불처리가 안되는 경우 은행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다.

□ 신청인은 귀국 후 2008. 5. 14. A카드사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카드사는 2008. 5. 15. VISA카드사에 이의신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이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한 반면,

□ A카드사는 신청인이 긴급구호서비스를 주장한바 없으며(신고내용 녹취),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서비스[6]는 동건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동 건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사용 매출이 아닌 체크카드의 현금인출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으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매출청구 보류를

---

5) '선보상제도'란 신용카드회원이 해외사용 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중 매입사나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나 chargeback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또는 해당가맹점에서 매출 취소하였으나 다음 결제주기에 처리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선보상하여 회원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

6) 회원이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했거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카드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외현지에서 대체카드를 발행하여 주는 제도

등록•운용할 수 없고, 국제브랜드카드사 운영처리기준에 따라 최소 45일이 소요되므로 VISA카드사 처리결과에 따라 현금 미인출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하겠음을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 A카드사는 해외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이 인출되었는지 VISA카드사의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선보상하였다.

○ 카드사는 2008. 6. 24. 신용카드 선보상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VISA카드사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보상하여 주었고 VISA카드사로부터는 2008. 6. 30. 현금 미인출분을 환불받았다.

【시 사 점】

본건의 분쟁처리 후 A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카드사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해외현금 인출 시 예금통장에 인출된 것으로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미인출 된 경우에도 chargeback 회수시까지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선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확한 안내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14. 도난당한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로 인출된 예금 보상 요구(한국소비자원)

【신청요지】

신청인은 2009. 2. 21. 02:00경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본인 차량에 탑승했다가 잠든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갑, 휴대전화, 가방 등을 도난당하여 같은 날 10:00경 ◇◇카드사에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함)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02:57부터 03:12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피신청인 제휴 현금인출기(나이스)를 통해 이 사건 카드로 신청인 예금 계좌에서 이미 20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 신청인(소비자)은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노출이 쉬운 번호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갑 속에 적어 두지도 않는 등 비밀번호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카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추출한 것으로 보이고 밤 늦은 시간에 비밀번호 오류 후 20회에 걸쳐 예금이 인출되었음에도 아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출된 예금 및 수수료 6,024,000원 중 적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이 도난당한 현금카드(신용카드 겸용)는 카드 정보가 내장된 IC카드가 아니라 비밀번호가 카드의 MS(magnetic stripe)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본부 전산(HOST)에만 암호화되어 있어 외부 기기를 통해 입력된 비밀번호의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정보가 외부 장비에 의해 이 사건 카드 자체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정황상 카드가 복제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현금카드 약관에 따라 분실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사실 관계】

□ 이 사건 카드 도난(신청인 진술 중심)

○ 도난 일시 : 2009. 2. 21. 02:00경

○ 도난 경위 : 신청인이 당일 음주를 하여 대리 운전을 부르기 위해 신청인 차량 내(운전석)에서 휴대 전화를 충전하려다 잠든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갑, 휴대전화, 가방을 절취함.

○ 도난 물품
- 지갑 : 바지 앞 주머니에 보관하였으며 지갑에는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 들어있었음.
- 휴대전화 : 잠금 상태로 차량 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이 사건 카드 비밀번호와 다름.
- 가방 : 차량 뒷 좌석에 두었음.

○ 이 사건 카드 분실 신고 일시 : 2009. 2. 21. 10:02(◇◇카드사)

○ 이 사건 카드 현금 인출 내역
- 부정 인출 일시 : 2009. 2. 21. 02:57~03:12
- 부정 인출 금액 : 6,000,000원(300,000원씩 20회 인출)
- 수수료 : 24,000원

  *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03:19부터 03:23까지 2,000,000원(300,000원 6회, 200,000원 1회)이 인출됨.
- 현금 인출 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그랜드마트 분당점 옥외 현금인출기(나이스 CD기)
- 비밀번호 오류 횟수 : 없음
- 비밀번호 유출 경위 : 확인 불가능(이 사건 카드와 타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같으며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되는 번호는 아님)

○ 타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현황
- ☆☆카드(02:45~03:42) : 4,000,000원(현금서비스 2,000,000원, 카드론 2,000,000원)
- □□카드(02:46~02:47) : 600,000원(부정사용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으로 인출 중단됨)
- ◎◎카드(02:51~02:52) : 600,000원(부정사용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으로 인출 중단됨)

○ 수사 진행 현황(◆◆경찰서 지역2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인)
- 범인 2명이 체포되었는바, 범인은 이 사건 외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200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비밀번호 취득 수법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

○ 신용카드 보상 현황

- 신청인은 신용카드(☆☆카드, □□카드, ◎◎카드, 이 사건 카드 현금서비스 부분)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대금에 대해 각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보상 규정에 따라 각 60%~70%씩 보상받고 종결함.

□ 관련 약관

○ △△카드 개인회원 약관(2005. 7. 가입 당시)

제10조(현금 자동지급기의 이용)

①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9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3조의 자동대체 결제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②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동대체 결제계좌를 은행이 정하는 지급기 이용이 가능한 예금 종목으로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④ (생략)

⑤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25조(약관 변경 승인 등)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현재)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현재)

제1조(현금 카드)
①현금카드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예금주가 당행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 교부받은 모든 카드를 말한다.

제2조(카드의 이용)
②카드 거래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제8조(분실, 도난 등)
①예금주가 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당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
①제8조 제1항의 경위 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자동화기기가 신고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된 경우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행이 예금주의 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5. 10. 14. 판결 2005나7151

- 기초 사실 : 성명불상자가 피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의 패스(H캐피탈 출금카드)와 출금카드 비밀번호가 보관된 컴퓨터를 절취한 후 하남농협 덕풍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900만 원을 인출함.
- 원고(H캐피탈) 주장 : 피고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출되었고 약관의 규정(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 책임)에 의하여 피고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피고 주장 : 비밀번호를 고의로 누출하지 않아 과실이 없으며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므로 부정사용 책임이 없음.
- 판단 : 약관의 비밀번호 누출이라 함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누출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출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약관 조항이 비밀번호의 누출에 관하여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에게 비밀번호의 누출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출금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위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 책임 유무 및 범위

○ 신청인이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은 시점(2005. 7.)의 개인회원 약관 제10조(현금 자동지급기의 이용) 제1항은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9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3조의 자동대체 결제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현금 인출 기능을 현금서비스 기능과 동일시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규정하여 비밀번호 누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책임 귀속 대상자를 정하여 현금서비스와 현금 인출 기능의 이용 근거와 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보았다. 이후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기능인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3항에 좇아 회원인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 변경되었으며 실제로 같은 지갑에 있던 이 사건 카드와 수개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부정 인출에 대해서는 각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에게 적정 금액을 보상하였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카드 발급 당시의 개인회원 약관 제25조(약관 변경 승인 등)에 따라 현금카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했어야 마땅하나 피신청인은 통지했다는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현금카드 약관 내용이 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현금카드 약관 제11조(면책) 제1항과 제2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설사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3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도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난 부정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절차는 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절차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비밀번호를 이용한 예금 부정 인출이 발생한 경우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금서비스와 다르게 책임 귀속을 규정한 현금카드 약관은 공정하지 아니하다. 결국 비밀번호가 일치하기만 하면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은 상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신청인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대전지방법원 2005. 10. 14. 판결 2005나7151)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범인들을 체포하여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경찰관에 따르면 범인들이 신청인외 200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번호로 만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비밀번호 누출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금 부정인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신청인도 차량에서 잠이 들어 이 사건 카드를 절취당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정 인출된 예금 및 수수료 6,024,000원의 60%인 3,61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61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09.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614,000원을 지급한다.

Ⅲ.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

6. 할부금융 관련

6-1.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대신하여 리스물건의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범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2003년 11월 20일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2대를 시설대여하여 연체 없이 리스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리스회사는 ○○군청에 리스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자신들이 납부했음을 이유로 신청인(리스이용자) 및 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실시함. 이에 가압류 해지를 위해 신청인이 동 취득세를 △△리스회사에 납부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리스회사가 신청인 본인에게 취득세 납부 상당액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함.

【사실관계】

□ △△리스회사와 민원신청인은 2003년 11월 20일 리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리스이용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취득세를 납부키로 약정하였으며, 2003년 12월 19일 △△리스회사가 신청인에게 납세의무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군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리스회사에 제출토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2006년 9월 18일 ○○군청에서 △△리스회사에 취득세 17,658,800원을 부과하여, 2006년 10월 2일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채권보전조치로 민원신청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함. 2007년 4월 10일 신청인이 취득세 납부금액 등을 △△리스회사에 납부함에 따라 채권가압류조치를 해제함.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취득세를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동 취득세 및 지연 납부로 인한 연체료까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한 취득세 상당액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한반면,

□ 피신청인 △△리스회사는 취득세 납부에 관해 취득세의 형식적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취득세의 부담주체임을 주장함.

【처리결과】

□ 본건 리스계약서상 특약에 의하면“리스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조세공과금(취득세 등)은 을(신청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든 업무처리와 납부가 이루어져야한다.”, “리스물건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갑(리스회사)의 명의로 하여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하며, 납부 즉시 취득세 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을이 이에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또는 금전적인 갑의 손해에 대해에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함.

□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리스회사라 하여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세 부담주체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관련 예규에 의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고객이 대신 부담하는 리스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시설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세정-3622,2004.10.19)”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취득세 부담을 제3자로 하더라도 동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원신청인의청구를 기각함.

○ 다만, △△리스회사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신청인이 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부담금 연체금액 1,820,006원에 대하여 반환의사가 있음을 밝혀 온 바, 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안내하여 △△리스회사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신청인이 동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됨.

【시 사 점】

□ 본건은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로 발생한 바, 리스계약시 리스이용자에게 취득세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의 처리내용에 대해 계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리스계약서상‘을이 지급할 비용을 갑이 대납하였을 경우’에서“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예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계약해지시 규정손실금 조항에 의하여 법적 조치비용 등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음. 그러나, 계약해지 전에 법적 조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주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계약서 조항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비용은 단순 비용금액을 청구하나, 취득세금액을 대납하였다고 하여 연체료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법적 조치비용과 취득세부담 등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여 리스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임.

6-2. 캐피탈사가 청구한 가압류비용의 정당성 여부(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A캐피탈사로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 연체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적절차예고통지서를 받고 2008년 8월22일 미납할부금을 결제함. 그러나, A캐피탈사는 2008년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민원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이에 민원신청인은 미납할부금 결제 시 가압류비용까지 결제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압류 해지 및 가압류비용 환불을 요청함.

【사실관계】

□ A캐피탈사와 민원신청인은 2007년 11월 9일 자동차 할부금융 1건(7,200만 원), 2008년 1월 25일 자동차 할부금융 3건(1억 1,800만 원)을 약정하였고 동 4건의 할부금융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B씨를 입보하였음. 그러나 상기 할부금은 2008년 7월부터 연체되었고, 2008년 3월부터 민원신청인의 타사 연체정보도 등재된 상태임.

□ A캐피탈사는 2008년 8월 13일 민원신청인과 연대보증인에게 법적절차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여 2008년 8월 22일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8월 12일 법원에 민원신청인과 연대보증인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명령을 신청, 8월 14일 가압류결정을받음.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법적절차예고통지서를 받고, 미납할부금 납부기한(2008년 8월 22일) 내에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캐피탈사가 법적절차예고통지서 발송이전인 8월 12일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압류 해지 및 민원신청인이 부담한 가압류비용 반환을 요구함.

□ 반면, A캐피탈사는 민원신청인의 미납할부금이 1억 3,100만 원에 이르고 할부금납입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및 2008년 3월부터 타사 연체정보 등재등으로 민원신청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바, 더 이상 채권확보를 미룰 수 없어 법적절차예고통지서와 병행하여 민원신청인과 연대보증인 B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한 것임.

○ 그리고, 민원신청인에게 가압류비용을 징구한 것은 할부금융약정서 상 동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임. 또한 2008년 9월 이후 민원신청인의 할부금이 다시 연체되고 있어 가압류해지 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A캐피탈사가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 법적절차예고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임.

○ 비록 A캐피탈사가 법적절차예고통지서 내용과 달리 가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나, 2008년 9월 이후 민원신청인의 할부금이 다시 연체되어 A캐피탈사가 민원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B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A캐피탈사에게 가압류를 해지 하라고 조정할 수 없음.

○ 또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비용은 할부금융약정서 상 채무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A캐피탈사가 민원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임.

□ 다만, A캐피탈사가 법적절차예고통지서를 민원신청인에게 보내면서 2008년 8월 22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단행하기로 하였고, 민원신청인이 동 일자에 연체원리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캐피탈사가 동일자 이전(2008년 8월 12일)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민법 제2조“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것임. 이에 양 당사자에게 가압류비용 889,370원의 50%인 444,685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합의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동 내용을 수용하여 해결되었음.

【시 사 점】

□ 금융회사는 권리행사 시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행사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여야 하며, 대출계약체결 시 비용부담 등 주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은 물론 약정서의 사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채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

○ 아울러, 은행권이 대출실행 시 이자율, 수수료, 비용 등 주요내용이 기재된 대출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캐피탈사도 이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3. 할부금융사의 근저당설정 착오로 인한 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 민원신청인은 2007년 8월 13일 트레일러 경기×××8(이하'1호차')을 B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으로 구입하였고, 2007년 11월 6일 또 다른 트레일러 경기×××6(이하'2호차')을 매도자가 B할부금융사에서 이용한 할부금 채무를승계하는 방법으로 구입함.

○ 민원신청인은 2008년 8월 1호차를 매각하기 위해 B할부금융사에 잔여할부금을 문의, 안내받은 5천 2백만 원을 전액상환(차량 근저당권 해지)하였으나, 추후 B할부금융사에서 잔여할부금 안내를 잘못하였다며 할부금 잔액 4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라고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함.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은 2007년 8월 13일 1호차 구입 시 자동차 할부금융 6천 6백만 원을 받았으며, 2007년 11월 6일 2호차 구입 시에는 B할부금융사에 대한 매도인의 잔여할부금 채무 6천 9백만 원을 승계받았으나 담보권 설정에 다음과 같은 혼선이 있었음.

○ 1호차 구입 시(민원신청인) : 경기××96 담보권 설정('08.8.28. 2호차로 담보물 변경)
○ 2호차 구입 시(장××) : 경기××80 담보권 설정('07.11.16. 1호차로 담보물변경)

□ 민원신청인은 2008년 8월 점유하고 있던 1호차를 매각하고자 동 할부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였으나, B할부금융사의 착오로 자동차원부상 담보설정된 차량번호 및 2호차에 대한 잔여할부금을 5천 2백만 원으로 잘못 안내하여 민원신청인이 동 금액을 납입하였고, B할부금융사는 이를 완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민원신청인에게 1호차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발급함.

○ 착오처리 내용

계약번호	일 자	할부금융 이용자	할부액 (중도상환시 잔액)
207cccc2 (1호차)	'07.8.13 '08.8.28	민원신청인 민원신청인	6천 6백만 원 (5천 6백만 원)
206vvvv8	'06.11.7 '07.11.16 '08.8.25	장×× 장××→민원신청인 민원신청인	6천 9백만 원 (5천 2백만 원)

적 요	금리	점유차량 (저당권설정일)	원부상 담보차량
취급 시 담보물 변경	11.0%	경기×××8 ('07.2.27)	경기xx96 경기xxx6
취급 시 채무자 변경 중도상환	10.7%	경기×××6 ('08.8.28)	경기xx80 경기xxx8 경기xxx8

* 민원신청인은 차량제작회사인 (주)CC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고 차량지입회사인 (주)AA를 차량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채무자로 등록하고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음

【당사자 주장】

□ B할부금융사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 차량제작회사인 (주)CC와 민원신청인의 할부물건 일치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치 않았고, 차량지입회사인 (주)AA가 B할부금융사에 민원신청인의 점유차량과 실제 담보차량을 다르게 통보하여 민원신청인이 1호차의 잔여할부금 문의 시 2호차의 잔여할부금으로 잘못 안내함. 이로 인해 1호차의 미상환잔액 5천 6백만 원 중 상환되지 않은 4백만 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반면, 민원신청인은 B할부금융사가 안내한 대로 2008년 8월 1호차의 할부금 잔액을 상환하였음에도, B할부금융사가 할부금융 취급 시부터 담보를 실제차량과 다르게 설정하고도 모든 책임을 민원신청인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 B할부금융사는 업무착오로 인하여 민원신청인의 의사와 달리 2008년 8월

25일 2호차 할부금을 중도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후 1호차 할부금 잔액에 대해 2009년 5월까지 원리금을 계속 상환한 것으로 처리함. 이에 민원신청인의 의사대로 1호차 할부금을 상환하고 2호차 할부금 잔액을 계속 상환해 온 것으로 계상하여 양쪽을 비교한 결과,

○ 민원신청인이 6백만 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 온 것으로 파악되어 동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백만 원은 이자조정을 통해 향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고, 1호차의 할부금 잔액 4백만 원은 감면키로 함.

□ B할부금융사와 민원신청인은 할부금 상환일정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미상환 원리금의 일부에 대한 채무감면에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함.

【시 사 점】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 취급 시 선순위 담보설정으로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함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담보를 설정하거나,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는 차량과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의 일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6-4. 할부금융사의 계약 중도해지 시 리스보증금 반환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민원신청인은 A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이 리스료 잔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인의 동의 없이 차량소유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본인이 지급한 리스보증금(12,132,000원) 반환을 요청함.

【사실관계】

□ 민원신청인은 2008년 1월 21일 A할부금융사와 체어맨차량(12X0000 2008년식, 차량가 : 40,440,000원)에 대해'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 12,132,000원을 A할부금융사에게 납입함.

□ 민원신청인은 2008년 10월 15일 폐업하였고, A할부금융사는 민원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2008년 10월 27일, 2009년 1월 22일 및 2009년 2월 6일 리스계약해지예고장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이를 통지함.

○ 민원신청인은 2008년 2월 26일 당초 리스계약상 주소지인'부산 XX구 OO동 000번지 OO그린타운 - 001호'에서'OO그린타운 -XX2'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A할부금융사의 2008년 10월 27일 우편물은 어느 주소지로 발송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2009년 1월 22일 우편물은 신주소지로 발송하여 동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A할부금융사는 2009년 3월 17일 민원신청인의 구주소지로'사업자 폐업에 따른 일시불 청구 최고장'을 발송함.

□ 연대보증인은 2009년 3월 25일 A할부금융사에게 리스차량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이의제기 등 문제발생 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며, 차량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대여자가 이전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 A할부금융사는 2009년 4월 2일 민원신청인이 지급한 리스보증금 및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금으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금을 정산*하고 2009년4월 3일 연대보증인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등록함.

* 리스계약 중도해지 정산내역 ○ 손해배상액 = (해지일 현재 잔여리스료 × 110%) + 무보증 잔존가치 ⇒ 25,114,313원 + 12,132,000원 = 37,246,313원

□ 민원신청인은 2009년 4월 13일 연대보증인의 차량도난신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차량을 연대보증인에게 인도함.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은 A할부금융사가 본인에게 통보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본인이 지급한 리스보증금 12,132,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 A할부금융사는 본건 리스계약은 민원신청인의 폐업 등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며, 본건 리스는 운용리스로서 차량의 소유권이 A할부금융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A할부금융사가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할 때 민원신청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또한, 민원신청인의 리스보증금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민원신청인의 손해배상액과 상계처리된 것이므로 민원신청인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처리결과(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 본건의 쟁점은 ① 본건 리스계약 해지처리의 정당성 여부, ② A할부금융사의 리스차량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 여부, ③ A할부금융사의 리스보증금 상계처리의 정당성 여부임.

① 본건 리스계약 해지처리의 정당성 여부

○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약관 규정

제17조(리스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리스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치유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반 환요구·강제회수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리스이용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해지처리의 정당성 여부

「리스약관」 제17조는 폐업을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단서는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원신청인의 경우 2008년 10월 15일 폐업하였고, 민원신청인이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이를 대납해 준 사실이 있는점 등 민원신청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면,

○ A할부금융사는 「리스약관」 제17조에 따라 민원신청인의 폐업을 사유로 본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계약해지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민법」 제11조제1항)한다고 볼 수 있고, 본건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민원신청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와 민원신청인이 이를 인지한 명확한 시점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A할부금융사의 본건 리스계약 해지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원신청인의 폐업, 신용악화 사유 등은 본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

○ A할부금융사가 민원신청인의 폐업 이후인 2009년 1월 22일 민원신청인에게 리스계약해지예고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동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 A할부금융사가 민원신청인에게 리스계약 해지에 대해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추어 의사표시의 수령 여부에 대한 민원신청인의 귀책사유가 A할부금융사에 비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 민원신청인과 금감원 직원과의 유선통화 시 민원신청인은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A할부금융사에게 전화로 해지사유를 문의한 결과 영업폐지가 그 사유라는 말을 듣고 문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할부금융사의 리스차량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 여부

○ 본건 리스는 운용리스로 리스차량이 A할부금융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A할부금융사에게 있고,

- A할부금융사의 본건 리스계약 해지처리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A할부금융사는 리스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할 것임.

③ A할부금융사의 리스보증금 상계처리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리스약관」규정

○ 제12조(리스보증금)

③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으로 연체된 리스료를 포함하여 갑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7조(중도해지)

③ 계약요약표(1) 기재의 리스구분이 운용리스일 경우 본조 제①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이 제19조에 의한 차량반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과 동 해지일 이후의 연체리스료, 경과이자 및 기타 을이 채권회수 및 권리보전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 등을 배상하기로 한다. 단, 제21조제①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액 = (해지일 현재 잔여리스료 × 110%) + 무보증 잔존가치

○ 제19조(리스계약의 종료)

③ 중도해지를 이유로 갑이 차량을 반납할 경우에는 제21조제①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유명의가 갑으로 등록된 후 본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에는 갑은 즉시 갑의 비용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명의를 을로 변경함과 동시에 차량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1조(중도해지수수료)

① 계약요약표(1) 기재의 리스상품이 운용리스일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갑이 차량을 을에게 반납이행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도해지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 중도해지수수료 = (총 차량가격* × 연차비율**) * 총 차량가격 = 리스계약서 차량정보 기재의 총 차량가격 ** 연차비율 = 리스실행일 기준 13개월부터 24개월 경과 시까지 25%

나) A할부금융사의 손해배상 산정근거 적정성 여부

○ A할부금융사는「리스약관」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해지일 현재 잔여리스료 × 110%) + 무보증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37,246,31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리스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A할부금융사의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리스약관」 제17조제3항은 리스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해지일 현재 잔여리스료 × 110%) + 무보증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의 의미는 ① 민원신청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차량을 사용할 경우 민원신청인이 차량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② 단순히 민원신청인이 본건 「리스계약」 제19조에 따른 반납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리스약관」 제19조제6항에 의거 차량의 훼손, 멸실 등 기타 사유로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리스회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리스약관」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차량반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차량의 훼손, 멸실 등에 준하여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시키고, 동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반납의 무의 지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리스약관」 제1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총 37,246,313원인데 이는 해지 당시의 차량의 시가 34,963,194원보다 큰 금액으로 민원신청인이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손해배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리스약관」 제21조는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차량반납을 이행한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이용자가 차량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차량의 반납을 완료하는 때까지 반납 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 리스약관」 제17조제3항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적용하는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량반납이 지체된 경우에도 제17조제3항의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본건 리스차량은 A할부금융사가 그 소유권을 연대보증인에게 이전하여 보증인이 차량을 반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후 민원신청인이 연대보증인에게 본건 차량을 인도하게 되어 민원신청인 입장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 민원신청인이 본건 차량을 반납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음.

다) 민원신청인의 손해배상액 및 상계처리 금액

○ 본건의 경우, 결국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고 민원신청인이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과 민원신청인 간의 손해배상 분배 또는 구상관계, 연대보증인과 A할부금융사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민원신청인의 A할부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리스약관」제21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와 반납지연에 따른 반납지연금을 합한 10,941,072원* 상당이라 할 것임.

* ① 중도해지수수료 = 총 차량가격(40,440,000) × 연차비율(25%) = 10,110,000원
② 반납지연금 = 일 납입액(1,133,300/30) × 경과일수(11) × 200% = 831,072원
① + ② = 10,941,072원

○ 따라서 민원신청인은 A할부금융사에게 10,941,072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A할부금융사는 동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리스보증금 12,132,000원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 1,190,928원을 민원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

□ 본건의 경우 A할부금융사는 민원신청인에게 1,190,928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원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시 사 점】

할부금융사는 리스계약체결 시 리스이용자에게 계약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리스이용자가 의무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도 계약해지 절차의 바른 이행과 약관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함. 아울러, 할부금융사가 손해발생이 없다고 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안내를 소홀히 함으로써 리스이용자가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만사항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5. 할부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금융감독원)

【신청요지】

A캐피탈사의 민원신청인 외 임○○은 2008년 1월 21일 중고차 할부대출에 대하여 민원신청인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원신청인에게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함.

【사실관계】

□ A캐피탈사 ○○중고차지점은 2008년 1월 21일 민원신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민원신청인 외 임○○에게 중고차 할부대출 3,400만원(차종 벤츠 S320,대출기간 36개월)을 취급하였는바,

○ A캐피탈사는 위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인인 민원신청인의 인감증명서(2008년 1월 7일 ; 대리 발급), 주민등록등본(2008년 1월 7일 ; 민원신청인의 처 김○○ 대리 발급)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구함.

□ A캐피탈사는 2008년 2월 4일 16:21경 연대보증인에 대한 본인확인, 연대보증 내용 및 대출취급조건 등을 안내(해피콜)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민원신청인의 전화번호“010-4701-△△△△”로 전화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16:26경“010-4743-△△△△”*로 전화하여 민원신청인을 사칭한 자에게 본인확인 등을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함.

* “010-4743-△△△△”은 민원신청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임.

○ 상기내용은 A캐피탈사 담당직원 ○○○의 해피콜 확인내역(메모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위 직원이 현재 퇴사한 관계로 민원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과정에서 민원신청인의 전화번호가 아닌“010-4743-△△△△”로 전화를 하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음.

○ 녹취파일에는 본인확인 시 위‘성명불상자’가 민원신청인의 이름 중 가운데 한자가‘서로 相’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상서 祥’로서, 통화자가 민원신청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

【당사자 주장】

□ 민원신청인의 처(김○○)는 같은 직장(□□생명)에 근무 중이던 민원신청인 외 박○○(주채무자 임○○의 처)이"남편이 경찰 공무원인데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재산세 납부자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급히 부탁하여 위 박○○에게 민원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 그 직후 박○○과 A캐피탈사 직원, 차량판매 딜러로부터 위 임○○이 차량 구입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이를 분명히 거절하였으며, 본건 대출서류에 민원신청인 본인이나 처 김○○이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A캐피탈사가 민원신청인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 A캐피탈사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관련 기본서류를 제출받고 유선으로 본인확인 및 대출거래 주요조건을 설명하였으므로 민원신청인의 보증책임 부존재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함.

【처리결과(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본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자, A캐피탈사는 민원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책하고 민원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본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

【시 사 점】

본건은 캐피탈사가 민원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취하되었지만, 민원신청인이 대출서류에 기명날인 및 서명을 하지 않았고, 제3자가 민원신청인을 가장하고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아 표현대리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바, 보증의 효력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음. 금융기관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및 보증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6. 자동차 할부대출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금융감독원)

【신청요지】

신청인('김△△', '김□□')은 A캐피탈사가 신청인 외 (주)KK물류에 대한 '경기00바0△78 차량관련 할부대출'건에 대해 본인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인들은 보증채무가 없으므로 청구중지를 요청함.

【사실관계】

□ 2006. 8. 29. A캐피탈사는 신청인'(김△△','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청인 외 (주)KK물류에 대한 차량할부대출금 1억 800만 원을 취급함(약정번호 ×××××301, 이하'본건 할부대출').

* "할부대출약정서"상 구입물품은'16톤 초장축+냉장윙바디 1대, 제작년도 2006년'으로 명기되어 있음.

○ 신청인 외'김○○'(신청인'김△△'의 아들이며'김□□'의 오빠임)은 (주)KK물류의 화물차량 지입차주로, (주)KK물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것임.

*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 김○○이 실제 배차받아 운행한 차량은'경기00바0057 25톤 화물차'로,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과 상이함.

□ 2006. 9. 6. A캐피탈사는 신청인에게 본건 할부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연대보증 확인 통보서"를 발송하였음.

* 해당 서면에는 약정번호 : ×××××301이 명기됨.

□ 2006. 12. 1. A캐피탈사는 신청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였음.

2. 관련 : 할부대출계약서[할부이용자 : (주)KK물류] -계약번호 : ××××30-001××××, 계약일자 : 2006.8.29 -등록번호 : 경기00바0X58, 물건명 : 카고트럭

* 위 할부대출 약정번호 ×××××301과 동일한 의미임

□ 2007. 5. 7. 김○○은 자신이 운행하던'경기00바0057 25톤 화물차'를 (주)KK물류에 반납한 후, 2007. 5. 25. 2,000만원을 (주)KK물류에 송금하면서 위 2,000만 원으로 모든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음.

* 위 확인서 상단에는'경기00바0057 김○○'이라는 문구가 명기됨.

□ (주)KK물류는 2008. 6. 30. 폐업하였는데,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경기00바0△78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1. 12. 신청인 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음(전주지방법원 2009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 본건 관련 차량내역 정리

구 분	차량번호	차 종	제작일자	등록일자	소 유 자
실제운행 차량	경기00바 0057	25톤 화물차 (뉴파워트럭)	'06. 8. 10	'06. 10. 23	(주)KK물류
신청인 주장 할부차량	경기00바 0X58	16톤 화물차 (뉴파워트럭)	'06. 9. 2	'06. 11. 16	(주)KK물류→ZZ물류('08. 6) →LL로드('09. 9)
피신청인 주장 할부차량	경기00바 0△78 (분실됨)	16톤 화물차 (나인냉동 윙바디트럭)	'07. 6. 13	'07. 7. 6	(주)KK물류

【당사자 주장】

□ 김○○은 실제로는 (주)KK물류로부터'경기00바0057 25톤 화물차'를 배차받아 운행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16톤 화물차'를 목적물로 하는 본건 할부대출을 진행하였음.

○ 2006. 8. 29. 본건 할부대출약정 후 실제 출고된 차량은 2006. 9. 2. 제작, 2006. 11. 16. 등록된'경기00바0X58 16톤 화물차'였는바,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은 위'경기009바0X58 차량'으로 특정된 것임.

○ 2006. 12. 1. A캐피탈사가 신청인에게 송부한 내용에도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이'경기00바0X58'로 명시되어 있음.

○ 김○○은 2007. 5. 7. 위'경기00바0057 25톤 화물차'를 (주)KK물류에 반납하였고, 2007. 5. 25.에는 2,000만원을 (주)KK물류에 송금하여 모든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주)KK물류와 협의 후 동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음. 그 후 2008. 6. 4.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인'경기00바0X58 차량'이 (주)ZZ물류로 매각됨으로써 신청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건 할부대출 취급일(2006. 8. 29.)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07. 6. 13.에 제작되어 2007. 7. 6.에 등록된'경기00바0△78 차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며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함.

【피신청인 주장】

□ 차량할부대출의 특성 상 할부대출 약정 성립 시에는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 등록 및 근저당 설정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된 차량번호로 할부대출을 관리하게 되는바, 본건 할부대출의 대상 차량은'경기00바0△78 차량'으로 특정되었음.

○ 피신청인은 (주)KK물류와 2006. 8월경부터 80건의 할부계약을 일시에 체결하였고 (주)KK물류가 장기간에 걸쳐 차량의 등록과 근저당 설정업무를 이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 실수로 본건과 같이 계약일자(2006. 8.29.)와 차량 등록일자(2007. 7. 6.)가 크게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임.

○ 2006. 12. 1. A캐피탈사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내용에 표시된 차량번호'경기00바0X58'은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상이함.

○ 신청인이 본건 할부대출의 대상물건으로 주장하는'경기00바0X58 차량'은 신청인 외'김O분'의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약정번호 00897)로, 김O분이 2006. 10. 18.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 김○○은 자신이 실제로 운행하던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주)KK물류에 지입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서류 상으로만 반납을 요청하며 보증인 삭제를 요구한 것임. 이후 (주)KK물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차량 반납 및 보증인 삭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신청인 김△△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된 것이며, 2007. 5. 25 김○○이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든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과는 무관한 것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경기00바0△78 차량’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 피신청인은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은‘경기00바0△78 차량’으로 특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위 차량의 할부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A캐피탈사가 신청인에게 송부한 내용을 보면 본건 할부대출 일자(2006.8. 29)와 약정번호(×××××301) 및 차량 등록번호가‘경기00바0X58’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점

- 본건 할부대출약정서에는 차량의 제작연도가 2006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로 주장하는‘경기00바0△78 차량’은 2007. 6. 13.에 제작되어 등록된 점

- 위와 같이‘경기00바0△78 차량’은 본건 할부대출 취급일자(2006. 8.29.)로부터 약 10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한 후(2007. 6. 13.)에 제작되었고, 할부대출약정 시 차량이 특정되지 않고 그 후 제작 또는 등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은 위 2006. 12. 1.자 통지한 내용에 업무착오로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정식 공문에 목적물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또한‘0X58’과‘0△78’은 숫자가 두 자리나 다르므로‘단순한 오타’로해석할 수 없는 점

- 피신청인은 금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이 본건 할부대출의 대상으로 주장하는'경기00바0X58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은 신청인 외 김O분의 차량구입을 위한 약정번호'00897'관련된 것이고 김O분은 2006. 10. 18.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확인결과 위 약정번호'00897'할부대출은 김O분이 아닌 신청인 외'윤O선'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 김○○은 실제로 운행한 차량을 2007. 5. 7. (주)KK물류에 반납하고 2007. 5. 25. 2,000만 원을 추가부담금으로 정산하면서'신청인과 관련된 할부대출'을 (주)KK물류가 정리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KK물류가 2008. 6. 4. (주)ZZ물류로 매각함으로써 할부대출을 정리한 차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경기00바0X58 차량'이었던 점,

□ 위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본건 할부대출의 목적물이'경기00바0△78 차량'으로 특정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기00바0X58 차량'으로 특정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처리결과】

'경기00바0△78 차량'관련 할부대출에 관한 신청인의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시 사 점】

동 건은 여신금융회사가 차량관련 할부대출의 목적물과 보증채무의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된 바, 여신금융회사는 할부대출 취급 시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함은 물론 채무자나 보증인과 약정 시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Ⅳ. 부록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장 총칙<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3.12>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

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허가 또는 등록<개정 2009.2.6>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

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2]

제7조(허가·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第8條 삭제<1999.2.1>

第9條 삭제<1999.2.1>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개정 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개정 2009.2.6>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

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0.3.12>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3.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3.12]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2>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3.12]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第22條 삭제<2006.4.28>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

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절 시설대여업<개정 2009.2.6>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3절 할부금융업<개정 2009.2.6>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개정 2009.2.6>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

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개정 2009.2.6>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개정 2009.2.6>)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넘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안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 삭제<2007.8.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本店)·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理事)·감사(監事)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懲戒免職)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相應)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임(在任)하거나 재직(在職)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

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그 기간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常務)를 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8.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辭任)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5(감사위원회)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

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株主)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

을 제기하여 승소(勝訴)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장 감독<개정 2009.2.6>

제53조(감독<개정 2009.2.6>)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개정 2009.2.6>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③삭제<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6>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53조의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③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본조신설 2009.2.6]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

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3.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의2(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第59條 삭제<2001.3.28>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개정 2009.2.6>

제62조(설립<개정 2009.2.6>)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9.2.6>

⑤삭제<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2.6>

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第66條 삭제<1999.2.1>

第67條 삭제<1999.2.1>

第68條 삭제<1999.2.1>

제7장 보칙<개정 2009.2.6>

第69條 삭제<2009.2.6>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장 벌칙<개정 2009.2.6>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12>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2.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3.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4.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附則 <제5374호,1997.8.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信用카드業法 및 施設貸與業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적용례) 第68條의 規定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가 設立된 날부터 적용한다.

第4條(信用카드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認可받고 同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를 모두 許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信用카드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認可받고 同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同項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중 第1號의 業務만을 許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兼營與信業者로서 信用카드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信用카드業法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割賦金融業을 認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割賦金融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施設貸與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을 認可받은 施設貸與會社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施設貸與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을 認可받은 者로서 施設貸與會社가 아닌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兼營與信業者로서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

⑥이 法 施行당시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을 認可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新技術事業金融業 및 施設貸與業을 登錄한 者로 본다.<개정 1999.2.8>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業을 許可받거나 登錄한 者로 보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 이내에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삭제<1999.2.1>

第6條(罰則 및 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信用카드業法 및 施設貸與業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이 法은 新技術事業金融會社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法은"으로 한다.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6號중 "新技術事業金融會社"를 "與信專門金融業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을 登錄한 與信專門金融會社"로 하며, 同條第10號를 削除한다.

第2章(第4條 내지 第11條)·第46條第1項 및 第50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②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3(施設貸與業者에 대한 關稅減免適用등) ①與信專門金融業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貸與業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가 減免되는 物品을 輸入하는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與施設利用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輸入申告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貸與施設利用者가 納稅義務者로 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減免을 받은 物品에 대하여 關稅를 徵收하는 경우에 納稅義務者인 貸與施設利用者로부터 徵收할 수 없을 때에는 施設貸與業者로부터 이를 徵收한다.

③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22條第2項 및 第36條第2項중 "信用카드業法 第2條第1號"를 각각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로 한다.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⑤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2第1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⑥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⑦印紙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8號중 "施設貸與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⑧割賦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各號외의 부분 但書 및 第4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중 "信用카드業法"을 각각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⑨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1號중 "施設貸與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⑩이 法 施行당시의 法令중 종전의 信用카드業法·施設貸與業法·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信用카드業法·施設貸與業法·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741호,1999.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韓國綜合技術金融株式會社法廢止法律) <제5819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생략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5374號 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4條第6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10條(與信專門金融業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과 동시에 會社는 與信專門金融業法상의 與信專門金融會社로서 施設貸與業 및 新技術事業金融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및 第12條 생략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⓪생략
⑤① 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5號 및 第16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4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6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7條第1項第1號 및 第62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57條第2項 本文 및 第3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59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⑤②내지 ⑦⑧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6430호,2001.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1호,2002.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을 "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藥事法상의 特例"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醫療用具"를 "의료기기"로, "藥事法 第34條第3項"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醫療用具"를 "의료기기"로, "藥事法 第42條"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706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43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344호,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 與信專門金融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⑲내지 ⑭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31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금융거래법) <제7929호, 200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信用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信用카드會員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信用카드會員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8265호,2007.0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83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25호,2007.7.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

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㉞부터 ㊼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㊻부터 ㊿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945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2호,2010.3.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주)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2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④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연회비)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타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최종사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회원이 서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모사전송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⑥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6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합니다.

④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⑤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할부구입)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율 인상시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0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1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2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시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3조(카드론)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5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소정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외국환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이자로 징수하는 수수료**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

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⑬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16조(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5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이 정하는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15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제18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2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보칙

제25조(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2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8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⑤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

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촉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

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 후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

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